

1999年度
國政監査

教育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教育部

日 時 1999年10月14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10시13분 감사개시)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 본부에 대한 1999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그리스도신학대학교, 한국의 국어대학교 그리고 경원대학교의 학내문제와 관련하여 증인신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3개 대학교의 증인 여러분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사립대학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재 또는 과거에 연관을 맺고 있는 각 대학은 제각기 다양한 원인의 학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분규의 실태가 어떠한 간에 분규로 인해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며 특히 미래사회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안정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학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해

결에 쉽게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대학의 여러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여 유형별로 원인을 규명하고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발전소위원회를 가동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해 주셔서 증인들이 관련된 대학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사학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그리스도신학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관련증인들에 대하여 학내문제와 관련한 신문을 한 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우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리스도신학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그리고 경원대학교 이상 3개 대학의 학내문제 관련보고를 들은 다음 3개 대학의 증인선서를 일괄해서 하고 각 대학별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별 신문순서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원대학교 순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교육부장관입니다.

어제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경원대학교, 그리스

도신학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의 학교별 분규발생 원인, 경과, 현 상황,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원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설립자인 김동석 총장 사망 후에 동인의 배후자인 金容珍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91년9월17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퇴한 후 崔元榮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崔元榮 이사장이 법인 및 학교자금 218억원을 불법운영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현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98년9월25일자 이사회에서 崔元榮 이사장 등 9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李吉女씨 등 9명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99년9월6일자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李吉女 이사장 등 현 임원 8명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법원에서 선임한 이사장, 이사, 감사 대행자들이 99년9월11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李吉女 이사장측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제소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임원진의 직무집행정지와 법인 선임 직무대행자에 의한 법인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법인과 학교의 안정 및 발전이 저해되고 학내 구성원간의 분규발생 가능성이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동 법인의 李吉女 이사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과를 지켜보되 총장 및 학장에게 안정적 학원운영을 당부하고 법인 및 학교가 분규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의 학교법인 임원현황과 법인선임 직무대행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리스도신학대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법인 및 학교경영에 대한 이사들간의 견해 차이로 이사회가 이사장 지지 입장파 총장 지지 입장으로 양분된 가운데서 金相奉 등 4인의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문제를 두고 총장과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이 대립함에 따른 것입니다.

현 상황은 교명 변경, 元萬石 이사의 교육경력 및 재산처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사장측과 총장의 의견이 대립되고 高星柱 목사가 이사장을 고발하여 서울지검에 현재 항고수사 중이며 법인이사회가 金鎮建 총장을 해임하고 元萬石 이사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 징계절차 미이행으로 반려했으나 징계절차를 밝아 99년10월9일자로 해임하였으며 법인의 조치에 대하여 金鎮建 총장 및 일부 교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기 중인 총장의 해임에 대하여 학생 등이 반발할 경우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학내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高星柱 목사가 고발한 田昌善 이사장의 재산관리에 관한 배임건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나 참고인 중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동 법인은 종교재단이 설립한 법인이어서 가급적 우리부의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법인에 의한 자율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학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자율해결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의 학교법인 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의국어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李淑卿 이사장이 98년2월14일자로 朴昇濬 이사의 재임 중 과오와 재정적 손실 등을 이유로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하였다가 98년4월2일자로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曹圭哲 총장직무대행 등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이사장의 총사퇴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98년7월18일자로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이어 98년10월19일자로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심판은 98년12월28일자로 기각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임시이사진에 의한 학교 정상화가 추진 중이나 98년8월24일 이사회에서 曹圭哲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徐在明 교수가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현재 계류 중이며 李淑卿 이사장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徐在明 교수가 제기한 총장선임에 관한 소송 결과에 따라 학내분규의 재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李淑卿 전 이사장 등이 정이사체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 법인으로 하여금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른 학교운영을 하도록 당부하고 법인 및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총장 선임 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동 법인으로 하여금 적극 대응토록 하고 소송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르되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학교법인 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壽仁委員 하나 물읍시다.

장관계서 아까 그리스도신학대학 말씀하시면서 17쪽의 배임건은 '참고인 중지' 상태라고 했는데 '참고인 중지' 상태가 무엇이지요? 법률용어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검찰에서 조사하는 대상이 지금 출두를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중지상태인 모양입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니까 '참고인 중지'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아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확실합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법률적 용어라고 합니다.

○李壽仁委員 참고인 기소중지라든가 조사중지가 아니고……

○教育部長官 金德中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李壽仁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3개 대학교 증인들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19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신학대학교 田昌善 이사장 외 21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까.

田昌善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田昌善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0월14일

- 證人 田昌善
- 證人 奇俊舒
- 證人 金鎮建
- 證人 高星柱
- 證人 權舜澤
- 證人 林成澤
- 證人 元萬石
- 證人 金相奉
- 證人 邊衡尹
- 證人 曹圭哲
- 證人 李淑卿
- 證人 徐在明
- 證人 金泰定
- 證人 鄭圭浩
- 證人 曹在鉉
- 證人 李陽熙
- 證人 趙鍾赫
- 證人 張建
- 證人 尹重燮
- 證人 李大淳
- 證人 徐翰錫
- 證人 康祐赫

○委員長 咸鍾漢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와 같이 증인신문은 먼저 그리스도신학대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외국어대학교와 경원대학교 증인들께서는 귀가하시지 말고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대학교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교육부장

관에 대한 질의시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그리스도신학대학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여덟 분을 성명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高星柱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舜澤 교무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俊舒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奉 전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鎮建 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萬石 이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成澤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昌善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薛勳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田昌善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봐서 재정비리하고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개입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선배·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본위원은 4명의 교수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월에 4명의 교수에 대해서 재임용 탈락을 시키면서 그때 재임용 대상교수가 9명이었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證人 田昌善 예.

○薛勳委員 9명 중에서 4명의 교수가 탈락되었는데 金相奉 교수는 종교철학 소속이시고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수 조교수는 교회행정학 소속이고 서울대학에서 행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장현섭 교수는 사회학 소속이고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사회학박사를 받았습니다. 허미화 조교수는 아동복지학 소속이고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네 분의 교수들에 대해서 재임용 탈락시켰지요?

○證人 田昌善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薛勳委員 그런데 재임용제도라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교수능력을 보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의 탈락된 교수들은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한 분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金相奉 교수는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최근에 '김상봉 철학애기'라는 제하로 '호모 에티쿠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이달의 읽을 만한 책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10월에 책정되었고 이 달의 좋은 책으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10월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교보와 영풍 등에서 인문 베스트셀러로 꼽혀 있는 좋은 책을 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탈락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섯 분의 교수들을 보면 林成澤 교수는 전임강사였습니다. 신학부 소속이고 문학석사로서 그리스도신학대학을 나오시고 지금 현재 동아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용철 그 당시 전임강사는 기독교국제학부 소속이고 외대에서 교육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장렬 전임강사는 신학부 소속이고 신학석사를 하고 연세대학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신배 전임강사 이분도 신학부 소속이고 연세대에서 박사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연하씨는 조교수로서 교회음악학부 소속이고 박사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재임용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임용 탈락된 4명의 교수와 재임용 통과된 5명의 교수를 비교했을 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학생들에 대한 교수능력이 뒤떨어진 것입니까?

○證人 田昌善 학생들을 선동했습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연구능력과 교수능력은 상관이 없고 뛰어난데 학생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證人 田昌善 교수능력과 연구능력에 있어서도 학문적으로는 가르칠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해서 학내소요를 유발시키려고 했고 또 자기들이 제출하려고 선동하는 사진을 찍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薛勳 위원님께 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薛勳 위원님이 이사장 같아도 이런 교수는 아마 자기 학교의 교원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薛勳委員 증인, 예, 아니오로 요구할 때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證人 田昌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薛勳委員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연구능력과 교수능력은 문제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좋은 교수로 말씀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겠습니다. 보시면 아는 대로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학교에 비판적이고 이사장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이 이유를 가지고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의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이것은 사회 상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위원에 대해서 온갖 음해를 다 해 왔습니다. 4명의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켰는데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교수들인데 이사장한테 충성 않고 학교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탈락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그것의 시정을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음해를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창선 이사장과 관련된 두 명의 교수가 검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본위원의 비서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했지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내용의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창선 교수 이하 몇몇 교수들은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證人 田昌善 네 명의 교수를 재임용을 하지 않게 된 징계요구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薛勳 위원님에게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다고 그 다음에 교원징계청원을 한 부분도 역시 복사해서 薛勳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소요를 일으키고 학생을 선동한 이 사진도 역시 薛勳 위원님께 전달한 후에 적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薛勳委員 지금 그리스도신학대학에 재임용 탈락된 교수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본위원이 마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산고등학교 후배가 제 비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본위원의 후배가 한 명 있다고 해가지고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도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명 다 마산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그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네 명 중에 한 명이 마산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적극개입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리스도신학대학의 교수임용에 대해서 무슨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누구누구 교수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그 대답은 임성택 기획실장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대답하겠습니다.

○薛勳委員 알았습니다.

○證人 田昌善 김광호 비서관하고 임성택 기획실장하고 주고 받은 대화를 통해서 또 임성택 기획실장이 김광호 비서를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薛勳 위원이 지시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공소 부제기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薛勳委員 그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證人 田昌善 무죄 유죄와 관계없이 김광호 비서가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薛勳 위원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薛勳委員 내 비서니까 내가 지시를 하지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봉 증인 잠깐 나와보십시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證人 金相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측에서 새롭게 설립한 학교의 학생과 교수를 모집하고 들여놓고 난 다음에 2년만에 아무런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과를 없앴기 때문에 생긴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을 선동한 적이 없고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 측에서 재임용 탈락한 교수들의 부당행위를 20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대부분 다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회자인 신학과 교수가 술을 먹었다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證人 金相奉 그것은 허위유포가 아니었습니다. 1996년 10월 15일날 밤에 학생들이 일상적인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성은 상당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날이 화요일 저녁이었

는데 그 날은 종교철학과 학생들이 농성하는 날이어서 그때 제가 밤 12시에서 한 시 사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직교수들을 비롯해서 5명의 교수들이 거기에 들이닥쳤는데 그 중에 한 두 사람은 분명히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薛勳委員 목회자인 신학교수가 술을 먹은 것이 사실이네요?

○證人 金相奉 예.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장에게 폭언을 했다, 정남수 학생과장에게 폭언하고 인신공격했다, 기준서 교수에게 인신공격했다, 불법강좌를 개설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주십시오.

○證人 金相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강좌 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측에서 몇몇 교수들에게 정상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강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불법수업을 했다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작고한 고 장현섭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영국 셰필드에서 공부한 사회복지학의 권위자인데 그날 강의를 했던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의적으로 무슨 학생들이 분신이라도 할 것처럼 선동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사람이 장묘문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매장문화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장묘문화가 성립되어야 한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무슨 대단히 불온한 사상을 유포시키거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악의적인 거짓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종류의 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압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전창선 이사장께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신학대학을 나오셨습니까?

○證人 田昌善 한국에서 개설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목사님이 맞습니까?

○證人 田昌善 목사입니다.

○金許男委員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어떤 것입니까?

○證人 田昌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사랑을 이 땅위에 전파해서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金許男委員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 교리지요. 그러면 김진건 총장, 고성주 이사장, 권순택 교무처장, 김상봉 교수 등을 기독교 박애정신으로 포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습니까?

○證人 田昌善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학교가 화합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허용하려고 본인들에게……

○金許男委員 때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證人 田昌善 저는 그분들을……

○金許男委員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독선적 운영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독선적 운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證人 田昌善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 다음에 김상봉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이유를 간단하게 한 20초 정도로 말씀해 보세요.

○證人 田昌善 한 예를 들면 김상봉 교수가 저희 법인사무실을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을 때 제가 소변을 보러가려고 했는데 학생들과 같이 못 가게 할 정도로 막았고 지난 채플이 끝난 다음에 전 학장이었던 교목실장의 떡살을 잡고 욕을 할 정도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총장 해임 등에 일부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반발하고 동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동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田昌善 제 생각으로는 한 두 명의 교수는 같이 하려고 할 것이고 학생들이 지난 번에 데모를 했는데 첫날 여덟 명, 세 명, 열일곱 명, 스물다섯 명이 30분씩 국회에 자료로 제출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데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가 동요되지 않고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金許男委員** 이분들이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田昌善** 그분들도 없고 저희들도 학교에 재정적 부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진건 총장님한테 묻습니다.

총장님은 법인이사도 되고 총장도 되고 그렇습니까?

○**證人 金鎮建** 예.

○**金許男委員** 1992년5월29일에 기준서 학장 후임으로 취임했습니까?

○**證人 金鎮建** 예.

○**金許男委員** 이후 취임을 미루다가 약 8개월만에 1993년2월17일날 취임했습니까?

○**證人 金鎮建** 예.

○**金許男委員** 그 다음에 1999년3월에 사직하고 4월에 미국으로 간 일이 있습니까?

○**證人 金鎮建** 예.

○**金許男委員** 김진건 총장님은 교회장로십니까?

○**證人 金鎮建** 예.

○**金許男委員** 총장님도 기독교 기본교리가 무엇인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證人 金鎮建** 저는 기독교인은 삶의 모범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예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證人 金鎮建** 사랑입니다.

○**金許男委員** 사랑이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두 분 다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장로인데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싸워서 남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목사고 장로고 서로 자꾸 싸워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창피합니다. 화합이 되어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준서 교수와는 각별한 친구입니까?

○**證人 金鎮建** 예.

○**金許男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서 교수님, 김진건 총장과는 가까운 친구입니까?

○**證人 寄俊舒** 예. 40년 친구입니다.

○**金許男委員** 金총장이 학생들의 시위로 미국으로 도피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寄俊舒** 제 기억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미국으로 간 적은 있습니까?

○**證人 寄俊舒**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金許男委員** 김진건 총장을 미국으로 쫓아낸 당

사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證人 寄俊舒** 아닙니다.

○**金許男委員** 됐습니다.

고성주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證人 高星柱** 예.

○**金許男委員** 금년 1월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고 3월에는 전창선 이사장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高星柱** 사실입니다.

○**金許男委員** 권순택 교무처장, 학원수업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證人 權舜澤** 예. 맞습니다.

○**金許男委員** 학원수업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작성 등에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됩니까?

○**證人 權舜澤** 제 자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교무처장님은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證人 權舜澤** 교인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 학교의 전직 이사였습니다.

○**金許男委員**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정말 교인, 목사, 장로들이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는데 한 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고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데 여기 나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창피합니다.

하여튼 어떠한 일이든지 화합해서 다시는 이런 데에 안나오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朴承國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田昌善 이사장님, 이 대학 재단 이사장을 맡은 지가 몇 년 됩니까?

○**證人 田昌善** 이 대학 이사장을 맡은 지가 1991년11월30일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재단에 개인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법인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왜 2년 동안 공석으로 둥니까?

○**證人 田昌善** 高星柱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서 高星柱 감사를 재선임을 했는데 재선임이 안됐습니다. 교계의 화합적인 차원을 위해서 高星柱 감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이사들의 의견이 高星柱 감사쪽으로 안모아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朴承國委員**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사·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학교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대한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99년9월18일에 임명을 다시 했는데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독촉장은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證人 田昌善** 문서로는 안받았지만 제 기억으로 전화는 수차례 임원 결원을 보충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

○**朴承國委員** 알았습니다.

교육부가 어떤 때는 임원 하나만 비면 야단을 하고 계고장을 세번, 네번 보내면서, 또 이런 데는 계고장 한번없이 2년 동안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것은 다음 시간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부가 이렇습니다.

증인은 학교 법인재산을 처리하면서 상당금액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표라는 것은 제 기일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는데 등기는 넘겨 주었거든요. 이런 사실이 맞습니까?

○**證人 田昌善** 그런 사실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산 38번지 매각대금은 본관 건축과 대물이었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되었고 당좌수표 6억7,000 부도처리된 것은 현재 소유권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저희 학교쪽으로 그 재산을 넘기고 손해배상청구 訴를 제기해서……

○**朴承國委員** 그러면 한푼도 손실이 없이 다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證人 田昌善** 한푼도 손실이 없이 다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은 법의 문제에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그 학교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다 받도록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證人 田昌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리고 3년간 14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증인이 거기에 8,000만원이나 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불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학생징계권이 총장에게 있고 학교에서 행사하는 일로…… 이사장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총장이 행한 일을 법인대표격인 이사장에게 소송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행한 일을……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이 14건에 8,000만원을 썼다는 이 말이지요?

○**證人 田昌善** 제 기억으로는 14건의 소송이 학교와 관계되어진 소송이 다가 아니고 여러 건으로 나누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承國委員**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이 소송 비용을 쓴 것은 재단 이사장이 모르신다 이 말이지요?

○**證人 田昌善** 학교가 행한 일은 이사장을 소송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총장이 1년간의 예산을 세워서 쓰고 나면 법인이 반드시 감사를 하고 또 이사회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한 자료를 봤을 때 이 많은 비용이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소송 비용으로 쓰여졌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궁도 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이사장직을 충실히 안했다는 얘기지요.

○**證人 田昌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安相洙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田昌善 증인, 총장 해임도 분규 원인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총장 해임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證人 田昌善** 校名 변경과 일곱가지의 사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설립이념을 대학평가서에 바꾸어 표기하고 그리고 규정은 학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인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법인운영에 관한 규정을 총장이 임의로 개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종합 평가서에서 자료를 좋게 만들어서 정직성을 상실했습니다.

다.

그리고 이사장 담화문을 붙였는데 교무처장시커가지고 떼서 찢어 버리라고 했고, 학교를 비우게 되는 경우 외국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사장에게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고, 우리 설립재단인 KCEF에 가서 법원에서 행하고 있는 교명 변경이 2명으로 부결되어 졌는데 거기 가서는 5명으로 보고하는 등 총장의 직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교명 변경이 재단 입장이나 이사장 입장에서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인가요?

○證人 田昌善 1개 교단, 1개 대학인가원칙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대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이사장과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울러서 학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의견을 종합 협의를 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장 임의로 변경되어지지 않은……

○安相洙委員 그런데 왜 무리하게 변경하려고 그랬을까요? 학교를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證人 田昌善 처음에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安相洙委員 한 가지만 대보세요.

○證人 田昌善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전체 의견을 무시한 채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사장 8년을 하면서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했겠습니까? 서당개 3년이면……

○安相洙委員 됐습니다.

權舜澤 교수와 高星柱 재단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검찰에 한 두차례 고발당한 적 있지요?

○證人 田昌善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고발 내용이 무엇이지요?

○證人 田昌善 고발내용은 제가 행한 모든 전체적인 일입니다.

산 38번지 매각과 본관 건축 그리고 화곡동 B빌딩 매각처분 관련 그리고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安相洙委員 등촌중학교 부지매매 혹은 본관 신축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셨지요?

○證人 田昌善 예, 받았습니다.

○安相洙委員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證人 田昌善 그것은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安相洙委員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내 분규와는 달리 사소한 문제가 크게 확대된 감이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장과 權舜澤 교수 등 관계자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證人 田昌善 총장님은 제 스승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과 저와의 관계는 저희 부부보다도 더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방향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고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權舜澤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高星柱 재단법인 이사장하고 교계의 화합에 대해서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의 일치를 서로 수용하기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安相洙委員 金鎮建 증인, 강서대학교로 개명 추진하는 것이 신학교로서의 특성을 포기하고 일반 종합대학교로의 변신을 노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金鎮建 저는 학생들의 장래와 교수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제가 총장직을 사임할 정도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면 개명문제는 학생들 85%, 교직원 85%, 교계 지도자들…… 출연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설립법인 초대이사, 학장이라든가 그 외 총동문회 회장이라든가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유관기관들의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처음에는 이사 8명중에 5명이 개명에 찬성을 해서 이렇게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생각들이 달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신학과는 50명 그 다음에 다른 과는 전부 280명……

○安相洙委員 그러면 왜 나중에 생각이 변했을까요?

○證人 金鎮建 제가 상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이사회 안에서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발전하면 한푼도 내지 않는 이사들의 위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네들의 위치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安相洙委員 증인은 이사장이 두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證人 金鎮建 예.

○安相洙委員 이 과정에서 증인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습니까?

○證人 金鎮建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安相洙委員 고발한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지요?

○證人 金鎮建 제가 관여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는마는……

○安相洙委員 조금 전의 얘기와 왜 다르지요?

○證人 金鎮建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安相洙委員 고발된 사안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지요?

○證人 金鎮建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고 상태로 있는 줄 압니다.

○安相洙委員 1심에서 무혐의 되었고 항고 상태에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고발측에서 고법에 항고해서 수사 중입니다.

○證人 金鎮建 1심에서 전체가 다 무혐의 된 것이 아닙니다.

○安相洙委員 아까 존경하는 金許男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랑으로 교인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서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證人 金鎮建 제가 볼 때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항상 그냥 사랑으로 덮어둔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보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심판 지어주게 되면 잘된 것은 점점 잘되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교수를 네명을 자르고 그것 말고도 또 새로 임명한 네명 그 사람들도 자르고 총장도 자르고 또 교무처장도 자르고 내말 안 들으면 다 자른다. 이것은 폭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용납한다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安相洙委員 그런데 아까 갑자기 薛勳 위원 말씀이 나오셔서 가지고 薛勳 위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證人 金鎮建 薛勳 위원과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薛勳 위원께서는 해직교수들에게 항상 관심을 두시고 인권을 주장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는 그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田昌善 이사장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威鍾漢위원장, 金日柱간사와 사회교대)

○證人 田昌善 감사합니다.

학교가 화합적인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은 이사장의 본분에서 총장은 총장의 본분에서 각자의 말은 위치에서 자기 일에 전념을 하면 그것이 곧 화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준과 법적인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장이 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총장은 계속적으로 해임이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학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로서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외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학교가 안정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安相洙委員 교육부가 잘 판단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日柱 朴範珍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田昌善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종교법인입니까, 학교법인입니까?

○證人 田昌善 학교법인이 주체이고 종교법인이 함께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학교법인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주체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존중해서 운영되어야 되지요?

○證人 田昌善 사립학교법을 존중해서 운영함과 동시에 교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範珍委員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법률상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田昌善 예.

○朴範珍委員 그러면 어느 사회조직보다도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지요?

○證人 田昌善 예.

○朴範珍委員 그런데 보면 법을 잘 안 지켜요. 물어 보겠습니다.

화곡동 산 38의 1 외에 6필지 토지 9,323㎡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허가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처분금액은 56억8,700만원 이상이 된다. 그런데 57억 중 약 49억의 부도난 수표를 받았고 처분금액 중 42억원은 대학 회계로 전출하는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운영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법인회계에서 직접 공사비를 지급했어요.

또 재산의 처분은 공개적으로 처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매각대금은 법인이사장과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명의의 공동구좌로 공동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2년이상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았어요.

또 처분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아니하고는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된다. 이 허가조건이었는데 처분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證人 田昌善 1994년1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산 38번지 처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해 1월25일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다가.....

○朴範珍委員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證人 田昌善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행한 일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교육부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田昌善 교육부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사유서를 써서 정리

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朴範珍委員 이것은 교육부에게 다시 한번 물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화곡동 1122의 1 건물 일명 화곡 B빌딩 매각건에 관해서는 그 중에 일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을 처리하고 그럴 때에는 이사진들이 서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공개를 요구했을 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부를 했습니까?

○證人 田昌善 그 부분은 金鎮建 이사가 총장이 된 후에 의논을 했습니다.

○朴範珍委員 이사장 측근 중의 한사람 가운데 신정웅 이사가 있지요?

○證人 田昌善 등촌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신정웅 이사입니다.

○朴範珍委員 그 분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96년9월19일 33차 이사회에서 사임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1월14일 열린 34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신정웅씨가, 사임한 이사가 불참한 이사다. 불참으로 기록이 되고 또 36차 이사회에서는 이름이 빠졌다가 또 98년5월19일 열린 40차 이사회에는 다시 나타나고 어떻게 한번 퇴임한 이사가 빠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證人 田昌善 이사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해서 관할청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법적인 이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사회에서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에 나온 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朴範珍委員 교육부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장 불법해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이 있습니다. 정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싸움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총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장의 신분에 관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총장을 해임했어요. 사임 공고문을 발송해서 총장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당연히 안 받아주지요. 이것은 사

립학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니까요. 그 관련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田昌善 사립학교법 53조에는 총장의 임면에 관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총장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1항의 사항을 준수할 때에는 임기 전의 총장의 해임은 이사회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장을 교원으로 분류한 사립학교법 제14조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총장하시던 분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총장이 교원이나” 라고 했더니 “그것은 별정직이지 정무직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사립학교법 56조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책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단 임원 열한 분 가운데 여덟 분인 절대다수가 목사님이거나 전도사님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田昌善 예,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재단이 사실 대학운영을 자율적으로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세속적인 이 국회에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證人 田昌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範珍委員 金鎮建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분류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어떻게 해야만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金鎮建 무엇보다도 지난 40년 동안에 되어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수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 잘린 예를 들어서 네사람이라든가 또 이번에 된 또 네사람이라든가 여덟사람이 외국에 가서 8년씩 공부를 하고 온 그러한 훌륭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재들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른다는 것이 용납되는 한 이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도 좋고 관용도 좋지만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답게 우선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특성이 살려지지 그러한 정신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맡겨 놓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範珍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李壽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입니다.

金鎮建 총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교수들의 인권을 증시하고 자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상대방의 도덕성의 변화에 그렇게 생각해서 가지고는 이것은 정상화 안 됩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일종의 정상상태를 벗어난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하느님 앞에 회개를 하도록 바라고 도덕성이 회복되어서 교수들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방법이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내보내야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데 그 힘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무슨 자기 자신이 회생당하고 회개해 가지고 나를 자른 것도, 다른 교수를 자른 것도…… 국가, 민족, 인권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사장들이 횡포를 하는 데가 대학에 일반유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마 어떤 일부는 교육부하고도 유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에요. 비호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선이사는 파견을 하더라도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근본적인 방법은 이 학교의 양식 있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부의 일부 관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될 만한 사람들…… 이따 나중에 다른 대학을 하겠습니까? 일단 교육부에서 관선이사 파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부한테 버거운 사람은 일단 그렇게 해놓고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그것은 연목구어고 백년하청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이 현실을 아주 직시하고 방법을 다

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證人 金鎮建 매우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李壽仁委員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세요.

제가 하도 한심해서 참다 못해서 충고하는 것이예요.

田昌善 이사장님께 묻습니다.

증인께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학칙이지요.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학사행정에 관해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 했을 때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田昌善 예.

○李壽仁委員 그리고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제규정관리규정 제7조 제정권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1항을 보면 학칙, 제규정관리규정 등 각종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의 결재로서 행하고 제10조는 규정심의이지요.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로서 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예.

○李壽仁委員 이것은 고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의 제정, 개정권을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더니까 다른 이유는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증인은 초법적 존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초법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교인 중에도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하는지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 아니라고 그러고. 초법적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證人 田昌善 저는 초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李壽仁委員 벌써 아주 말하는 두며 자세며 지금도 웃음을 띄우는데 기본적으로 田昌善 이사장님께서 그런 자에 속하는지 안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겪어본 사람에 의하면 최고 사기꾼…… 최고 사기꾼일수록 아주 여유가 있고 그런 자세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田昌善 이사장님께서 매우 참고를 하십시오.

○證人 田昌善 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李壽仁委員 참고로 하십시오.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證人 田昌善 저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李壽仁委員 내가 기도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증인은 99년2월2일에 金鎮建 총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제규정 준수촉구 공문입니다. 교무위원회와 총장이 개정한 학칙개정 권한은 이사장의 권한이므로 불법적으로 개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證人 田昌善 학칙개정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李壽仁委員 그러면 뭘 했습니까?

○證人 田昌善 규정에는 학사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법인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운영에 관한 규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총장이 결재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李壽仁委員 됐어요.

金鎮建 총장님,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金鎮建 받은 적이 있고 우리는 학칙을 개정한 것이지 다른 것을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李壽仁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인데……

○證人 田昌善 교원임용권은 사립학교법에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됐어요.

이 제규정관리규정 제7조와 제10조 그리고 2월2일자 공문은 총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사장인 증인이 학사행정에 개입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학칙의 개정권자를 이사장으로 지정한 것은……

○證人 田昌善 학칙의 1장 1조의 목적은……

○李壽仁委員 좀 조용히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학칙의 개정권자를 이사장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법 20조의 2위반으로 이사장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증인은 결코 그리스도신학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첫째, 증인은 대학운영의 제도적 장치인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고 둘째, 대학을 사적 소유물로 착각하며 셋째, 대학의 학사행정에 불법개입하는 까닭에 학교법인의 대표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鎮建 총장님, 權舜澤 선생님 그런지 안그런지 확인하세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證人 金鎮建 저는 진심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權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權舜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李壽仁委員 이사장님께서는 여쭙어 보나마나 대답이 금방 예상되기 때문에 묻지를 않습니다.

올해 2월23일자로 총장이 증인에게 보낸 교원임면제청 공문을 보면 신규임용자의 경우 99년3월1일부터 임용되어야 하나 임용기일이 늦춰질 것에 대비해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와 그리스도신학대의 대우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7명의 임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서는 이 공문의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보십니까, 비합법적이라고 보십니까?

(金日柱간사, 朴範珍간사와 사회교대)

○證人 金鎮建 물론 100% 합법적입니다.

○李壽仁委員 아까 薛勳 위원이나 朴範珍 위원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하려는 얘기하고 중복이 되었는데 특히 교수들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도살장입니다.

그리고 제 발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묻고자 합니다.

결국은 화곡동 산38-1의 6필지 매매와 본관 신축공사 이런 문제 등에서 그리고 朴範珍 위원이 아까 B동이라고 지칭한 것 이런 것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액수는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횡령, 배임 이런 등등의 혐의가 아주 충분한 논증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사적 소유로 생각하는 아주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간주하고 오해를 받아도 아주 산 그런 것인데 특히 부도수표를 매각대금으로 받는다든지 부도수표에 관해서는 아까 朴範珍 위원이 질의했지만 대학이 입법부를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뜨리는지 도저히 상상할 길이 없고 또 유령회사와의 거래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는 사실은 몇 분 존경하는 위원들이 드러낸 사실만 가지고도 바로 임시이사진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관님하고 같이 얘기할 문제니까 다른 증인들은 들어만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範珍 다음은 金日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金日柱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와 앉으신 증인들의 학교 내력은 깊이 모릅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 정도에 불과한데 모두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證人 金鎮建 매우 창피합니다.

○金日柱委員 田昌善 이사장 그리고 金鎮建 총장님 창피하게 생각하시지요?

○證人 田昌善 죄송합니다.

○金日柱委員 이제 국회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데려다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자신들도 지금 굉장히 잠시동안이나마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학교는 설립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는 기독교 철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여러분 모두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우선 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법을 전부 위반한 분들이야. 일반인들하고는 여러분은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립이념과 둘째 번에는 인적구성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뭐 다는 아닙니다. 이 안에도 핵심적인 인물 몇 사람들이 인적구성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합니까? 세 번째는 교육이념과 인적구성과 재정의 뒷받침입니다.

田昌善 증인은 '나는 한 푼도 돈을 출연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지요?

○證人 田昌善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金日柱委員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가 1965년에 설립된 학교지요? 그때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證人 田昌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으로 되어졌습니다.

○金日柱委員 부끄럽지 않습니까?

○證人 田昌善 죄송합니다.

○金日柱委員 길게 제가 질의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요새 모 종교가 밖의 반대세력들이 들어온다고 철조망을 치고 또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의 근본은 사랑이다 그렇게 했는데 박애정신입니다. 전쟁 이후에 불쌍하다고 미국의 교회에서 돈 모아 가지고 저들을 교육을 시켜서 잘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사상을, 철학을 전파시켜서 밝혀야 되겠다 썩는 곳에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길러낸 金鎭建 총장은 그 학교출신이고 田昌善 이사장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田昌善 저는 그 학교 출신이고 金鎭建 총장님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金日柱委員 우리 숙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제지간에 고소·고발하고……

비유가 좀 저속할지 모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는 잡배들하고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林成澤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아마 이 학교에서 총학생회장도 지냈던 모양인데 아주 간략하게 지금 이 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30초 사이에 얘기해 보세요.

(朴範珍간사, 咸鍾漢위원장과 사회교대)

○證人 林成澤 이 학교의 문제는 총장은 총장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고 이사장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고 각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칙과 각종의 법을 나름대로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학내문제는 각자…… 특히 제 입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총장님의 규정 집행에, 학교내규 운영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아주 짝막하면서도 근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재단과 학교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장은 지금 봉급을 타고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안 타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차는?

○證人 田昌善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수당은 받는 것이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수당은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증인께서는 총장님하고 손잡을 생각이 있어요?

○證人 田昌善 총장을 새로 선임한 상태에서 총장을 들로 할 수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신입총장이 여기 오셨어요?

○證人 田昌善 예, 元萬石 이사를 새 총장으로 10월9일에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그 의결에 따라 10월9일에 총장해임을 하고 총장선임을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金鎭建 증인께서는 지금 평교수로 계신 것이지요?

○證人 田昌善 교수가 아닙니다. 이분은 당 법인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교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재단이사로는 그대로 계십니까?

○證人 田昌善 현재 재단이사를 해임했지만 우리가 아직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사로 출석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田昌善 증인은 金鎭建 증인과 화합해서 재단이사로서 학교를 잘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지금까지 학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 때 총장의 직위에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명예총장을 하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외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도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金日柱委員 그러면 재단이사로서는 손잡고 일할 의향이 있어요?

○證人 田昌善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화합하세요.

만약에 분쟁이 계속되면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해임되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저희들을 해임하지 않고는 임시이사 파견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金日柱委員 사실 다른 대학도 아니고 그리스도 신학대학 같이 예수의 사랑으로 설립된 대학이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여기 와서 앉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두 화합해서 하나가 되세요. 미국 교회에서 돈 모아서 설립했던 그때의 정신을 살리는 이사장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證人 田昌善 노력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손잡고 다시는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는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입니다.

田昌善 증인!

○證人 田昌善 예.

○李在五委員 목사님이십니까?

○證人 田昌善 예, 목사입니다.

○李在五委員 奇俊舒 증인은?

○證人 奇俊舒 저는 교수입니다.

○李在五委員 목사 아닙니까?

○證人 奇俊舒 전에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을 말씀하세요.

○證人 奇俊舒 현재로서는 아무런 직분이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증인은 교회 직분이 무엇입니까?

○證人 金鎮建 저는 현재 장로입니다.

○李在五委員 高星柱 증인!

○證人 高星柱 목사입니다.

○李在五委員 權舜澤 증인!

○證人 權舜澤 교인입니다.

○李在五委員 林成澤 증인!

○證人 林成澤 목사 했었고 지금은 교수입니다.

○李在五委員 元萬石 증인!

○證人 元萬石 지금 목사입니다.

○李在五委員 金相奉 증인!

○證人 金相奉 평교인입니다.

○李在五委員 다 신도, 목사, 장로시군요.

여기는 국정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증인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으로서는 대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田昌善 증인!

○證人 田昌善 예.

○李在五委員 여기에 성경하고 대법전이 있습니다. 이 2개 중에 어느 것을 믿습니까?

○證人 田昌善 기초는 성경을 믿고 또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李在五委員 됐습니다.

金鎮建 증인! 대법전하고 성경하고 2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습니까?

○證人 金鎮建 둘 다 믿습니다.

○李在五委員 田昌善 증인은 성경의 시편 49편20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證人 田昌善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증인!

○證人 金鎮建 죄송합니다.

○李在五委員 49편20절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다 장로다 이사장이다 대학의 총장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자리이고 귀한 자리지요? 田昌善 증인!

○證人 田昌善 죄송합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증인! 맞습니까?

○證人 金鎮建 예.

○李在五委員 그리스도신학대학은 아까 두 분의 증언에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은 그 동안에 그리스도신학대학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쫓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證人 田昌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보다 말을 더 잘 하시는군요. 단답으로만 대답하세요.

田昌善 증인은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총동문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동문목자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해외동문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역대총학생회장, 그리스도의교회 한국교역자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증인측의 단체들을 갖고 있지요?

○證人 田昌善 증인측의 단체는 아니고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입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증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총동문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학원수호공동대책위원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동문목자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총장측의 단체들을 갖고 있지요?

○證人 金鎮建 예.

○李在五委員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교수협의회 등이 양파로 나뉘어져서 각자 서로 지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두 분 다 알고 있지요?

○證人 金鎮建 예.

○證人 田昌善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대표적으로 이사장과 총장에 게만 묻겠습니다.

田昌善 증인은 金鎮建 증인에 대해서 다음 7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단 교명개명 추진으로 대학의 명예와 설립이념을 훼손했다, 설립목적을 임의로 바꾸어 표기했다, 각종 규정을 무단 개폐했다, 부당인사 및 공금을 유용했다, 입시부정 의혹으로 대학명예를 실추했다, 학내 위계질서 파괴 및 품위유지를 상실했다, 총장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田昌善 그렇게 해임사유를……

○李在五委員 증인! 여기서는 증인입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證人 田昌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證人 田昌善 예.

○李在五委員 金鎮建 증인!

증인은 관선이사 파견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29가지 가량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자료가 양쪽에서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金鎮建 증인과 田昌善 증인! 이것이다 증인들이 제출한 자료 맞지요?

○證人 金鎮建 예.

○證人 田昌善 예.

○李在五委員 여기에 보면 金鎮建 증인은 29가지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해임 기도, 총장의 재해임 기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을 총장 기피인물로 선정, 교원과 직원의 대대적 징계 기도, 핵심 보직교수의 파면을 용의주도하게 진행, 총장비서 등 직원 3인을 파면하는 등 극한 징계, 새 총장 불법 선임, 장애인 총장 선임은 학교를 조정하려는 이사장의 음모, 이사회 불법적 구성, 감사 1인 궤위 2년이 지나도 보임하지 않음, 교사신축 등 예산을 법인회계에서 집행, 개발권 불법 위임, 학생징계 소송비 일체를 교비로 지출, 부도수표 수령하는 등 회계규칙 위반, 공사비 부풀려 계상하고 교육부에 허위보고, 운동장 조경공사비 결제완료 주장 실제로는 잔금 미결제, 교육부 공동개설 통장 부도수표 입금으로 교육부 기만, 부당 학사개입 합법화, 정당한 급

여지급 방해, 4명의 재임용 탈락 등 무더기 재임용 탈락, 대학재정 손실, 형사사건 기소 교원을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 안 함, 총장의 고유권한인 보직임명권 방해, 예·결산 승인 거부, 자의적으로 총장직 사임 권고, 용역회사 직원들로 총장실과 행정부서 불법 점거,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한 대학 일체 봉쇄로 모든 출입자 통제, 총장업무 방해하고 새 직인 도용 보직 교체, 학사 마비…… 이러한 29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證人 金鎮建 예.

○李在五委員 田昌善 증인!

○證人 田昌善 예.

○李在五委員 지금 金鎮建 증인이 주장하는 29가지 이유가 다 타당합니까?

○證人 田昌善 어떤 부분은……

○李在五委員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證人 田昌善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증인!

○證人 金鎮建 예.

○李在五委員 아까 이사장측이 金鎮建 총장 해임에 대한 7가지 주장을 했는데 다 인정합니까?

○證人 金鎮建 인정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까?

○證人 金鎮建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총장 이력서에 성북고등학교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證人 金鎮建 인정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

○證人 金鎮建 저는 서울사대부고를 다니다가 폐결핵으로 휴학을 하고 그러다가 건국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시험에 합격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李在五委員 건국대 졸업과 미국 애빌린대학 졸업년도가 같다고 하는데 동시에 두 대학을 다녔습니까?

○證人 金鎮建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李在五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의 주장을 요약해 볼 때 金鎮建 증인측이 주장하는 것을 대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장 복직 및 관선이사 파견을 전방위적으로 로

비한 사실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은 총장 복직 및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서 청와대에 로비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鎮建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탄원서나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鎮建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감사원에는요?

○證人 金鎮建 예,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국회에는?

○證人 金鎮建 예, 국회에도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특히 청와대, 감사원, 국회 등에 이러한 로비를 한 적이 있지요?

○證人 金鎮建 로비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이것 제출한 것도 로비니까……

○證人 金鎮建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학원수호공동대책위원회라는 친위단체를 구성했지요?

○證人 金鎮建 그것은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장도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이사장체제 운영에 있어 드러난 문제를 부각, 여론화시키면서 학교내 혼란 조성파 교수사회 분란을 조성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요? 오해인지 사실인지……

○證人 金鎮建 사실이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교인들간의 알력다툼으로 교인·목사 등이 양분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金鎮建 그것은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李在五委員 학교 설립목적 및 교명 개명 등 기본 설립목적의 훼손 및 왜곡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金鎮建 인정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田昌善 증인!

○證人 田昌善 예.

○李在五委員 증인은 이사장의 법인 및 학교운영이 독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인정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재임용·신규임용의 문제, 회계문란, 토지매입 문제, 元萬石·신정웅 2명의 이사 인사문제, 방만한 법인운영의 예로 동춘중학교 이전문제 이런 것으로 운영이 미숙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여건을 조

성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만 말하십시오.

○證人 田昌善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총장실 점거 및 용역회사를 동원해서 학교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총장 직위해제시키고 총장이……

○李在五委員 증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제가 물었습니다. 설명은 이 자료로 충분합니다.

○證人 田昌善 제 생각으로는 불법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李在五委員 불법 총장해임 및 재임용 탈락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불법 총장해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학교를 영구집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전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불법 학사 개입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안 합니다.

○李在五委員 결론적으로 金鎮建 총장 등 이중국적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인정합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총장 이중국적 인정하십니까?

○證人 金鎮建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田昌善 증인, 9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학교를 독선적으로 운영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證人 田昌善 인정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총장은 田昌善 이사장 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田昌善 이사장은 金鎮建 총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학대학의 해결방안으로써 참신한 인물로 전 이 사진을 개편하고 이사장 및 총장 두 분은 동반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田昌善 증인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입니까?

○證人 田昌善 안 받아들입니다.

○李在五委員 金鎮建 증인은 받아들입니까?

○證人 金鎮建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申樂均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그리스도신학대학의 문제는 우선 총장과 이사장 두 증인 간의 불신과 견해 차이에 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인 총장 해임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본위원회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전창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30일 이사회를 열어 김진건 총장의 해임을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證人 田昌善 부산에 있는 부산중앙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申樂均委員 왜 부산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證人 田昌善 저희들이 이사회를 열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사회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사회를 안전하게 개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이사회를 열 때마다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證人 田昌善 몇 차례 있었습니다.

○申樂均委員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김진건 총장도 이사의 한 사람입니까?

○證人 田昌善 그렇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이 이사회에 김진건 총장도 이사회 소집통보를 받았나요?

○證人 田昌善 참석을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김진건 총장 부산에 참석을 했습니까?

○證人 金鎮建 제가 미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화로 들어서 급히 와서 참석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리고 해임결의에 앞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진건 총장에게 해임사유를 알리는 소집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당시 金 총장은 자신을 징계하는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金 총장에게 알렸습니까?

○證人 田昌善 해임 및 총장선임의 건을 넣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申樂均委員 金 총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證人 金鎮建 물론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證人 田昌善 일주일 전에 소집통보서에 명기해

서 통보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해임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는 총장한테 알렸습니까?

○證人 田昌善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되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갔습니다.

○申樂均委員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른다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證人 田昌善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립학교법 53조2항을 적용해서 총장해임을 의결했는데 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 56조를 위배하는 의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았습니다.

○申樂均委員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56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통보한 것은 8월9일로 되어 있는데요.

○證人 田昌善 그래서 8월10일자로 이사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를 해서 9월28일자로 해임의결을 징계위원회에서 해서 10월9일날 총장해임의결을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8월9일날 위반했다고 교육부로부터 반려를 받았는데 10일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새 총장 대리를 선임한 것이 맞습니까?

○證人 田昌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申樂均委員 그러면 증인은 한국환경관리공사 소속 요원을 수 십명 고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지금 대학이 고용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건물관리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수 십명을 고용한 것은 언제입니까?

○證人 田昌善 그것은 제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대학에서는 누가 고용을 했습니까? 총장님이 고용하셨습니까?

○證人 金鎮建 물론 아닙니다.

○申樂均委員 이런 것을 고용할 때는 누가 합니까?

○證人 田昌善 그 용역은 총장이 고용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조금 더 보충했다고 생각합니다.

○申樂均委員 지금 金 총장은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고 이사장님은 총장이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證人 田昌善 고용에 관한 계약은 사무국장이 여기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사무국장, 한국환경관리공사 소속의 용역직원을 고용했습니까?

○그리스도신학대학교事務局長 朴成淳 부산 회의에서 총장을 해임하고 선임을 해서 직무대리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직무대리 총장한테 받았다는 것입니까? 직무대리로 결정한 것은 8월10일인데 이분이 총장 취임을 정식으로 했습니까?

○證人 田昌善 총장 취임 안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안 했는데 그분이 총장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까?

○證人 田昌善 8월9일까지는 사립학교법 53조에 의해서 총장해임이 정식으로 결의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 8월9일자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서 총장 직무를 10일날 직무대리로 선임을 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하는 것은 이미 대학이 김진건 총장 체제 하에 있을 때 그 회사하고 용역계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래도 용역계약을 한 것하고 직원을 수 십명 일시에 고용한 것하고 같지 않습니다.

○證人 田昌善 몇 명을 더해서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申樂均委員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장실 점거하고 김진건 총장과 권순택 교무처장에게 일어난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田昌善 그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파손시키는 것에만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교육부가 총장 해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證人 田昌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시에 따라서 10월9일자로 총장직무대리를 선임하려 했고 또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가 10차에 걸쳐서 징계의결을 해서 그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김진건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해임사유에 대한 몇 가지인데 특별히 규정을 이미 개폐한 것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밝혀 보십시오.

○證人 金鎮建 제가 총장으로 와보니까 규정이나 모든 것을 이사장 결재없이 못바꾸게 만들어놓고 이사장이 100% 학사 개입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교육부에 자문을 해보니까 학칙개정은 총장의 권한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무회의를 열어 적법하게 학칙을 개정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證人 金鎮建 예.

○申樂均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역으로 이사장의 학사개입이 반증되는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證人 田昌善 사립학교법하고 고등교육법하고 법이 상치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의장이 교원이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申樂均委員 그 설명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적합하게 되었다면 됐습니다.

우선 이 그리스도신학대학은 사건은 일반 상식적인 도덕적 또 법적인 절차에도 위배되지만 그리스도 정신에는 더욱 어긋나서 모든 기독교인을 매우 부끄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반성하고 바로 잡는데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비는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金貞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이름으로 보아서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슬픔입니다. 어떻게 신앙인들이 이렇게 서로가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못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대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자나 또 일선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본분이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다 하셨기 때문에 나올 것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창선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지금 김진건 총장과 교수들 측으로부터 의혹이

있는 것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의혹이 많은 중에 산 38번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 앞서서 물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관 건축설계를 보면 설계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더 축소되었지요?

○證人 田昌善 그렇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건축비는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證人 田昌善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 일조권에 의해서 3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비가 더 들어갔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金貞淑委員 실비가요? 건물에 어떤 시설을 더 집어넣는대거나……

○證人 田昌善 또 지하층이나 내부시설을 저희 학교가 학교로 되어 있지만 학교용지로 지정이 안되어서 학교건물로 건축허가를 못받고 종교관으로 허가를 받아서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고치는 과정이었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 방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매각가격입니다. 산 38번지를 팔면서 실지가격보다 매우 낮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느냐, 여기에 어떤 리베이트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證人 田昌善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 38번지가 91년도에 공지가가가 3만6,000원이었는데 2년 동안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한 사람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대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공항에서 4km이내이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받고 또 철탑이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아서 현재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그 다음에 화곡동에 있는 B빌딩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들어와 있습니다.

돈도 받기 전에 등기이전해 주었다 이런 의혹도 있고 경매를 포기하고 실수요자를 찾아서 수익계약도 하고 이런 일들로 해서 여기에도 증인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證人 田昌善 저희들이 경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강서구청에서 성업공사에 경매의뢰해 가지고 두번 입찰이 안돼서 세 번째 들어가면 한 50% 이하의 값으로 떨어져서 한 1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 다음 총장 해임 사유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신학대학이 江西大로. 그러면서 총장을 해임을 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학교 개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학교 이름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과고는 의견수렴같은 것 한적이 있습니까?

○證人 田昌善 강서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때에 학생하고는 의논이 안되었고……

○金貞淑委員 지금 교직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證人 田昌善 50명입니다.

○金貞淑委員 그 중에서 교수는 몇 명이에요?

○證人 田昌善 21명입니다.

○金貞淑委員 아주 가족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인데 이렇게 21명 교수하나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왜 이런 파동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신학대학이 분규가 난 것으로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것도 신앙가지신 분들이…… 학교이름 바꾸었다는 것이 총장 해임의 한 사유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총장이 입학생 모집할 때 강서대학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지금 그러는데 학교이름을 바꾸려면 공청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또 졸업생들 동창회 의견도 좀 들으면서 바꾸어야 하는 것아니예요.

이사장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학교 이름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됩니까?

○證人 田昌善 그렇기 때문에 교명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서서히 하자고 했는데 총장님께서 지역사회 유지들을 불러놓고 바꾸겠다고 하고 또 표결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매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랬다고 그냥 총장을 해임시켜요?

○證人 田昌善 ……

○金貞淑委員 본인은 교수채용원칙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또 직위해제를 시킬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證人 田昌善 교수채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들의 설립이념에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金貞淑委員 설립이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신앙이 있어야 합니까?

○證人 田昌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학문 이 세가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해제를 시킬 때는요, 파면시킬 때는 어떤 원칙으로 합니까?

○證人 田昌善 지금 해임이나 파면을 시킨 교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총장만 해임을 했을 뿐이고 네명의 교수는……

○金貞淑委員 權舜澤 교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證人 田昌善 직위해제를 한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직위해제시킬 때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證人 田昌善 직위해제를 시켰을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을 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金貞淑委員 직위해제를 시킬 때는 설립이념, 인격, 학문도 본다는 얘기인데 權舜澤 교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證人 田昌善 세 가지가 다 해당되어서 아니고 權舜澤 교수는 96년에도 고발을 했고……

○金貞淑委員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여쭙는 것은 이사장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證人 田昌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다음 元萬石 이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은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분이 자격조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證人 田昌善 자격조건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元萬石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1년6개월의 조교수 대우 경력밖에 없지요?

○證人 元萬石 지금 연한은 모르겠는데 조교수였습니다.

○金貞淑委員 조교수라고 해도…… 총장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證人 元萬石 제가 아는 바로는 총장은 별정직기 때문에 학력과 법기준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

각합니다.

○金貞淑委員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직책입니다. 총장은 교수들이 다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학문적인 업적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밑바탕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신학대학이니까 신앙심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 몇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총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조교수로 1년6개월 해가지고 어떻게 총장이 됩니까, 이제 막 출발한 사람이 조교수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元萬石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제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金貞淑委員 그리스도신학대학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학문적인 경력이나 인격적인 사회경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교수 1년6개월된 선임자가 충분하다고 자기가 변론을 하고 있어요.

이사장 답변해 보세요.

○證人 田昌善 元萬石씨는 1941년생으로서 그동안……

○金貞淑委員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신학대학이 대학이 아니고 무슨 이익만 많이 남기면 되는 회사나가요? 직원을 많이 거느리려면 인격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證人 田昌善 인격은 뒷받침이 됐고……

○金貞淑委員 그러면 학문적으로……

○證人 田昌善 학문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金貞淑委員 총장이 되려면 학문적인 배경이……

○證人 田昌善 그 분이 낸 지금까지의 책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의 교수들이나 타 대학에 못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학문적인 자질과 업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총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어째서 많은 교수들이 이를 걸고 있어요?

○證人 田昌善 많은 교수가 아니라 金鎮建 총장님을 돕고자 하는 몇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金鎮建 증인 나와 보세요.

金鎮建 증인은 왜 강서대학교라고 전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썼습니까?

○證人 金鎮建 강서대학교라고 쓴 적이 없고 여럿이 강서대학교로 추진증인 것으로 본다. 예를 들

어서 학생들이 85%, 교직원이 85%, 학부모들 그 다음에 총동문회 회장, 교육자 회장, 재단법인 회장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중으로 하다가 그것이 추진이 제대로 못 된 것 뿐입니다.

○**金貞淑委員** 아니, 99학년도 신입생모집 공고할 적에……

○**證人 金鎮建** 개명 추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金貞淑委員**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제 생각은 양측이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총장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신학대의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證人 金鎮建**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이사진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이 학교의 새로운 어떤 물결이 들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과오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잘 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역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저 역시 물론 그래야 됩시다라는 학생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냥 사랑이니 용서가지고는 안되고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올타리안에서 해결하셔야 할 일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편견이랄까 차별심리가 무섭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올타리안에서 한번 잘 풀어보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관련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관련 증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열한분을 성명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泰定 교수협의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邊衡尹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明 전 총장선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重燮 법인 사무처 부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淑卿 전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陽熙 전 기획실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 建 노동조합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圭浩 전 교수협의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圭哲 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在鉉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鍾赫 법인 사무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인사)

朴昇濬 전 이사는 오늘 아침에 **李陽熙** 전 기획실장을 통해 신병으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邊衡尹 이사장님!

금년 말이면 임시이사가 종료되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證人 邊衡尹** 압니다.

○**金許男委員** 관선 이사장으로 취임 후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보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邊衡尹**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曹圭哲** 총장님!

98년2월28일에 안병만 총장님이 조기퇴임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曹圭哲** 예,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총장후보 선출에 있어서 303명 중에 169표를 얻고 **徐在明**씨가 129표를 얻어 40표 차이로 선출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曹圭哲**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총장 취임된지 1년 넘었는데 그간에 총장님이 노력해서 학교에 발전이 있었다고 봅

니까, 발전이 없었다고 봅니까?

○證人 曹圭哲 그동안 여러 구성원들이 증지를 모아서 많은 부분을 개혁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앞으로 더 큰 발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고 믿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그 업적의 내용을 세밀하게 적어서 16일까지 제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證人 曹圭哲 지금 지참한 것은 곧 전달해 드리고 소상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金許男委員 총장 취임 후에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봅니까, 안 좋아졌다고 봅니까?

○證人 曹圭哲 98년 1학기 때는 저희 대학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시다마는 그때 많은 국민에게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8월24일 총장이 정식 취임되고 그리고 邊衡尹 이사장님께서 정식으로 취임되시고 관선이사가 취임한 이후로는 학교가 절대적으로 안정되고 데모 한번 없었고 교육이 원활히 잘 되고 지금까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총장님, 지금 이사장 변명하라는 말은 아니예요. 왜 묻지 않은 말을 답변합니까? 물어보지 않은 말은 하지 마세요.

○證人 曹圭哲 예, 알겠습니다.

○金許男委員 李淑卿 전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설립자 김홍배 박사님의 부인입니까?

○證人 李淑卿 예, 그렇습니다.

○金許男委員 전 이사 朴昇濬 증인이 친정 조카입니까?

○證人 李淑卿 예.

○金許男委員 증인이 친정조카 朴昇濬에게 14년간 학교운영권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李淑卿 예,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오늘날 이사장을 그만두게 되고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었을 적에 고인이 된 남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 안합니까?

○證人 李淑卿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남한테 맡겨 가지고 부정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가 되게 만듭니까?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지요.

증인은 지금이라도 임시이사 체제가 아니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면 학교운영이 제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임시이사 체제 아닙니까? 누구든지 정이사가 될 것 아닙니까? 정이사라고 하면 꼭 전이사가 정이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정이사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임시이사를 내보내고 정이사가 되었다고 할 적에 학교가 더 잘되리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에 복잡한 일이 생기기라고 생각합니까?

○證人 李淑卿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金許男委員 지금 임시이사가 내놓고 새로 이사가 누가 구성이 되든 구성만 되면 더 잘될 것이라고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證人 李淑卿 예, 그렇습니다.

○金許男委員 朴昇濬 전 이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朴昇濬 전이사가 모든 일을 잘못 만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사람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진단서를 첨부해서……

○金許男委員 오늘 나오기 힘들 정도의 그런 진단서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저희들이 구두로 다시 요구를 했더니 소리만 한번 질러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金許男委員 정신적으로 좀 약해졌다는 말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그런 것은 아닌데 혈압도 높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군요.

○金許男委員 그런 것은 고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委員長 咸鍾漢 그것은 나중에 회의를 마친 다음에 간사간에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내 의견으로서는 증인으로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게 되니까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고발이 되도록 준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昇濬 전 이사한테 물으실 것은 李陽熙 전 기획실장한테 물으시면 자세히 아실 것이라고 합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입니까? 朴昇濬씨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證人 李陽熙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저의 윗분이셨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李淑卿씨의 친정조카인 것이 확실합니까?

○證人 李陽熙 예, 맞습니다.

○**金許男委員** 14년간 모든 일을 대리로 맡아서 한 일도 맞습니까?

○**證人 李陽熙** 예, 맞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교육부의 몇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證人 李陽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許男委員** 지금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떤 풍문이 도느냐 하면 임시이사라고 하면 학교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정도 되어야 되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정관도 변경하고 뭐도 변경하고 완전히 치고 박고 해가지고 확 바꾸는 이런 권한까지는 관선이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관선이사는 현실에 어떠한 지금 복잡한 일이 있는 것을 조정해서 정상화시키는 정도까지는 될는지 몰라도 완전히 싹 바꾸어서 천지개벽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邊** 이사장님한테 이러쿵저러쿵 시비가 많다 말입니다. 일은 잘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하게 자기 권한 밖의 일을 완전히 해놓는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내 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

○**證人 邊衡尹** 물적 증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하여튼 모든 학교 행정에 관한 법을 고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邊衡尹** 고친 일이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朴承國**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邊衡尹 이사장에게 몇 가지 문질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위원장,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 하고 계시지요?

○**證人 邊衡尹**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지금 어디에서 상근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상근합니다.

○**朴承國委員** 첫 번째 증인은 외대의 임시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교수 19명, 직원 50여명을 무더기로 징계하여 상당수를 파면, 해임시켰는데 학내분규를 수습하라고 파견된 증인이 이렇게 무더기 징계를 해서 교수와 직원들의 교권과 생존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학교의 안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증인이 내린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도록 하였는데 단지 절차상 문제로 인한 취소였다는 이유를 들어 똑같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중징계하도록 지시하였지요?

○**證人 邊衡尹**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세 번째 증인은 98년8월24일 이사회에 **徐在明** 교수를 총장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견을 발표하라고 출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총장 후보자로서 인정하여 이사회에 출석시켰던 사람을 한달만에 해임시킨 일이 있지요?

○**證人 邊衡尹** 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朴承國委員** 해임은 징계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이사장이 시키는 것입니다.

○**證人 邊衡尹** 하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이사장이 번복할 수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네 번째 증인은 임면권자로서 직원들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형을 내리면서도 파면사유는 물론 관련서류들을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징계위원들의 보고만 듣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요한 문제를 취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증인이 이렇게 마구 결재할 수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아까 답변드렸습시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사장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면결재를 할 당시는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증인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파면이니 모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고 외대 단체협약에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해당교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행정기관의 적법한 명령조차 무시해 버리는 것이 소위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證人 邊衡尹**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개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도 있고 그 밖의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의

정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자세를 좀 낮추어야 됩니다. 와서 당당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론이 나면 돌아오겠지요.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적법한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무시해버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인은 이 같은 교수, 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로 인해 소중한 교비를 얼마나 법정소송 비용으로 낭비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邊衡尹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증인의 제자 변호사에게 수입료나 챙기게 해주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느냐 하고 의구심을 갖는 교직원들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證人 邊衡尹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朴承國委員 일곱 번째 증인은 불법으로 운영하던 고문직제가 문제가 되자 관선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에 고문조항을 삽입하려다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문직제를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지요?

○證人 邊衡尹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부에서 기각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렇습니까?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상임고문으로서 학사운영에 일일이 간섭하여 학교 행정부서의 결재란에 결재까지 하며 불·탈법을 관리자로서 묵인하고 있지요?

○證人 邊衡尹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증인은 상임고문 김종국에게 소요되는 경비가 급여 및 상여금, 비서 2인의 인건비, 기사인건비, 차량유지비, 판공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3억원이 부당하게 소요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3억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줄 아는데요.

○朴承國委員 아홉 번째 또 김종국은 학교직원을 비서로 두고 있는데 외대에는 부총장도 비서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문은 총장에 버금가는 높은 직위인 셈인데 대한민국에 외대 이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대학이 또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김고문이 비서를 두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대학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朴承國委員 열 번째 증인은 98년8월24일 이사회에서 동년 4월10일 전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徐在明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바 있는데 다시 曹圭哲 총장을 선임하셨지요?

○證人 邊衡尹 예.

○朴承國委員 열한 번째입니다. 9월23일 이사회에서는 4월10일 이사회 건을 무효화한다고 초법적 의결을 하였습니다. 8월24일 曹총장 선임후 무효화는 있을 수 없고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證人 邊衡尹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체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 체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朴承國委員 열두 번째 증인은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온통 학교전체에 유인물을 뿌리고 현수막을 걸고 학생을 동원, 버스를 대절하여 정부, 정당당사, 국회를 순방하며 항의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법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법의 내용은 압니다. 제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朴承國委員 그럼 시킨 것은 아닌데 이사장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교수나 또는 학생들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證人 邊衡尹 일단은 징계를 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보신다면 그 질의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니 여기는 국정감사장입니다. 증인이 답변할 필요가 없으면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證人 邊衡尹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안 하지요.

○朴承國委員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제2건국을 하는 증인께서 이 법이 나쁘면 대통령께 직언하셔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그러나 하면 제가 증거물이 많습니다. '교육

7적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놈이 그놈이다 속히 국회 교육위 해체'하러 이런 말을 써서 이 나라가 옹기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시킨 것을 7적, 8적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교수나 이사장께서 잘못된 것을 교육 7적, 8적 하면 되겠습니까?

○證人 邊衡尹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지요.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朴承國委員 지금 외대 안에서 유인물이 수십 종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상지대학, 대구대학 등 이런 케이스의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라는 지금 외대 안에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유인물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사장님이 그냥 이사장님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나라의 제2건국을 책임진 분이 그곳에 갔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교수나 학생들을 불러서 지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보다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하도 안타깝고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曹在鉉 교수에게 한 가지 물겠습니다.

교수께서는 징계를 당하셨지요?

○證人 曹在鉉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파면을 당하셨지요?

○證人 曹在鉉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이유가 무엇인지와 부당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曹在鉉 완전히 아무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인민재판식으로 저를 징계해서 파면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에게 내려진 그 모든 혐의가…… 정말 대학교수의 목숨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행히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다 취소되어서 살았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사유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서면으로 답변을 허용해 주신다면 일일이 제가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16일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證人 曹在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金貞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邊衡尹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증인은 외대 이사장이 되려고 사전운동까지 했

다는데 청와대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저는 사전운동한 일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사장이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다만……

○金貞淑委員 그런데 증인께서는……

○證人 邊衡尹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李海瓚 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金貞淑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임시이사회를 할 때마다 걸핏하면 金大中 대통령과 독대해서 처리하겠다는 등 최고권력과 가깝다는 것을 과시해 왔다는 것이 임시이사들로부터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도 부인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그런 이사들을 좀……

○金貞淑委員 그리고 李海瓚 전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李海瓚 장관이 증인을 외대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李海瓚 장관한테 물어보십시오.

○金貞淑委員 그러면 임시이사회 주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주 임무는 학교를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지요.

○金貞淑委員 그렇지요?

○證人 邊衡尹 예.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임시로 분규를 수습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파견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지난 2월 교수간담회 석상에서 앞으로 4·5년간은 내가 이사장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정권 하에서는 교육부장관도 필요 없고 증인이 원하기만 하면 임시이사장, 소위 말해서 관선이사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證人 邊衡尹 그것은 아니지요.

○金貞淑委員 도대체 제2건국위원회 대표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질의 다 하셨습니까?

○金貞淑委員 그 다음에 증인께서 외대 신규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어과, 서반아어과, 법학과 신입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만약 채용규정을 바꾸려면 사전에 발표를 하고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뽑고 있는 과정에 채용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가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이런 사태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것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떳떳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임시교원이사회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인사규정을 뜯어고치려고 했지요?

○證人 邊衡尹 인사규정을 고친 것은 모르겠고 지금 질의하신 분께서는 왜 일방적인 얘기만 들으십니까?

○金貞淑委員 일방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證人 邊衡尹 저는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교육부가 이 문제로 교수채용 관련 민원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證人 邊衡尹 다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金貞淑委員 보고하셨지요?

○證人 邊衡尹 보고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래서 그 결과 이사들이 막 항의를 하니가 문제의 인사규정을 원천무효로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증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 학사개입을 한 명백한 증거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증인에게서도 말씀하시기를 학교를 정상화시키려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정상화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證人 邊衡尹 그러니까 잘 아셔야 할 것은, 앞에 얘기한 것을 따져 드려야겠는데 저는 좋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정상화의 한 방법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교수 18명, 직원 50명을 무더기로 징계하셨지요?

○證人 邊衡尹 예.

○金貞淑委員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징계는 무효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徐在明 교수 외 11명, 직원 15명을 파면·해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또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무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邊衡尹 증인에게서는 이사장이라면 교수들을 자식 같이 사랑하셔야지, 자식이 좀 싸움을 하고 물의를

일으킨다고 해서 죽일 것입니까? 형무소에 보냈습니까? 설득을 하고 조금 나무라고 고쳐가고 그렇게 화합을 시켜야지 내려가서 1년 동안 내내 하신 일이 학교를 더 갈등 속으로 집어넣고 마음에 안 드는 교수들을 다 파면시키고 더 파벌을 조성해서야 되겠느냐고요. 그 구체적인 예가 많이 있지만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徐在明 교수를 파면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邊衡尹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金貞淑委員 예.

○證人 邊衡尹 앞의 얘기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金貞淑委員 답변 필요 없습니다.

○證人 邊衡尹 그렇게 일방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헤드리도록 하고 徐在明 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여기 기록에 보면 徐在明 교수가 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외대에 임시이사가 내려오기 전에 4월10일인가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뽑혔더라고요. 제가 쪽 읽어봤습니다.

그런 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들이 내려와서 새로 총장을 또 뽑았지요. 지금 曹圭哲 총장을 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총장의 보임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4월11일엔가 보고를 해서 총장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예를 들어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총장을 해임한다든지 아니면 徐在明 교수가 사임을 했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총장을 놓아둔 채로 총장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대에는 총장이 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金貞淑委員 예, 하세요.

○證人 邊衡尹 8월24일에 徐在明 교수와 曹圭哲 교수를 총장후보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徐在明 교수는 분명히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나왔지 총장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총장을 뽑으시려면 지금 현재의 총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받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해서 해임을 결의하든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교육부 인터넷에 외대 총장이 누구냐고 질의를 하니깐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徐在明이라고 답변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교육부에는 徐在明 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사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해임을 결의하거나 사퇴를 받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총장을 또 뽑았느냐 이 말이에요.

○證人 邊衡尹 4월10일의 결의는……

○金貞淑委員 그렇게 하니깐 더 분규가 커졌다는 말씀입니다.

○證人 邊衡尹 지금까지도 다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는 9월부터 시작되어야 하니깐 결국 두 사람을 놓고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인도 후보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서……

○金貞淑委員 법적으로는 徐在明씨가 총장 아닙니까?

○證人 邊衡尹 그것은 그 쪽 얘기이고……

○金貞淑委員 아니지요, 교육부에서 총장이라는데요? 법적으로 총장이 총장 아닙니까? 법적인 총장이 진짜 총장이지요.

○證人 邊衡尹 曹圭哲 총장이 법적 총장입니다.

○金貞淑委員 4월11일부터 7월 며칠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徐在明씨는 파면을 해서 쫓아냈는데 徐在明 총장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 중에 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으니까 무효다 하고 소송을 냈었지요? 그러다가 취소했지요? 왜 중간에 취하했습니까?

○證人 邊衡尹 그것은 徐在明 교수가 한 것이지요.

○金貞淑委員 아니요, 임시이사진 측에서 소송을 걸었지요. 徐在明 교수 측에서 한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임시이사진 측에서 소송을 걸었던 것을 중간에 취하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邊衡尹 이사장 같이 덕망이 높으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분이 내려가실 때는 다 자식 같이, 집안 식구들 같이 다스리라고 내려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李海瓚 장관은 李淑卿 이사장께 학교가 시끄러우니 한 1년 조용해지면 다시 주겠다고 하고 관선이

사를 내려보냈어요. 그랬으면 1년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잘 마무리를 해서 넘겨 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오래 오래 4.5년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더 분규의 소굴로 심각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邊衡尹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4.5년 하겠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金貞淑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薛勳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먼저 金泰定 교수협의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한 2분 사이에 외대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證人 金泰定 작년 분규 당시에는 제가 교수협의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외대사태는 기본적으로 재단분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작년에 이사장님의 신년사에서 아주 폭탄적인 선언이 있으셨어요. 뭐냐 하면 14년 동안 朴전무이사로 불렀던 朴이사에게 쪽 학교운영을 맡겨 왔었는데 그간에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사장님이 전체 교수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이나 교수들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재단의 많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사장님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시는 발언을 하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재단이 정상화되는가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사장님이 번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로서는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쪽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3월30일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그 중에도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朴이사는 축출한다는 내용입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박승준 이사가 오늘 안 나왔지요. 대신해서 이양희씨가 답변한다고 그랬습니까?

○證人 李陽熙 예.

○薛勳委員 외대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證人 李陽熙 11년 반 있었습니까.

○薛勳委員 그러면 박승준씨가 작년 5월29일에 공금 2억2,000만원 횡령과 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되어 복역하다가 8월4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감한 적이 있지요?

○證人 李陽熙 예.

○薛 勳委員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97년, 98년 학생 9명을 부정 편·입학시킨 대가로 2억7,000만 원을 조성해 가지고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소가 안 되었지요?

○證人 李陽熙 예.

○薛 勳委員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李陽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薛 勳委員 그것은 한상경 전 총무처장이 미국으로 도피해서 지금까지 안 왔지요?

○證人 李陽熙 예.

○薛 勳委員 이 사람한테 이 부분의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편·입학 비리 총책임은 한상경에게 있다고 떠넘기고 돈은 박승준씨가 썼지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박승준씨가 학교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감옥까지 갔다오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소용돌이 치게 되었고 결국은 이숙경 이사장하고 사이도 틀어지고 지금은 사이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외대사태의 본질은 학교 운영의 비리에 있다고 보지요?

○證人 李陽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薛 勳委員 그 다음에 변형윤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제가 따르는 분이지만 오늘은 증인이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반아어학과 교수 임용문제와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증인이 제시한 논문심사의 외부심사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올바른 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과정상에 있어서 해당학과 교수들과 원만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證人 邊衡尹 그 서반아어과를 중심으로 해서 세 과가 지난번에 못 뽑은 데입니다. 말썽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썽없이 뽑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무슨 지시를 내린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인사위원들의 합의사항입니다. 일하기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결국 외대와 관계된 쟁점사안은 교직원에 대한 징계문제입니다. 앞서 위

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는 교수들이 징계에 불복해 가지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고 또 직원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임시이사체제의 제일 첫째 역할은 학교를 안정시키는 일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비평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대의 경우에는 구재단 체제 하에서 뿌리깊게 내린 파벌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생각할 때 아마 임시이사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징계를 최소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이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에 서원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이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구 재단측 교수들이나 또는 관계인사들에 대해서 징계하려는 것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고 화합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잘 해서 지금은 서원대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잘 되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된 것이 참 아쉬운데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邊衡尹 제가 절대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답변하는 가운데 저도 물랐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바꿀 수 없고 내가 징계위원한테 여러 가지로 대화합 차원을 강조했고 이사도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위원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구성원의 이야기 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도장 찍어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은 이사장이 노 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징계위원들한테도 이사장으로서 호소를 하고 이사한테도 호소를 하고 대화합의 차원에서 가능하면 줄이고 그래도 징계위원들로 볼 때는 당사자들이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안 된 이야기지만 일단 처분 당한 사람들도 들어오려고 하면, 화합을 하려면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시끄러워진 것이

고 앞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薛勳委員 결국은 임시이사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학원의 안정입니다. 안정을 위해서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포용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이후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薛勳委員 결국은 지금 구 재단 측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지나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잘못에 대해서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기능을 만들어 내가지고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시다마는 이 이후로 상황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證人 邊衡尹 알겠습니다.

○薛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壽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이수인입니다.

조규철 총장님께 묻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시는 것이 이사장님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압니다. 이사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학교를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조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복적인 징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될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간단히 그것 잘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證人 曹圭哲 징계사항은 재단이사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대화합 차원에서 가능하면 학교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징계하기를 바랐고 개인적으로는……

○李壽仁委員 됐어요. 징계위원회가 총장 밑에 있고 다음 단계로 이사장 소관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證人 曹圭哲 그것은 저희 학교 정관에 징계위원의 선임 그리고 그 요청 자체가 전부 재단이사회에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장이 이사장입니까?

○證人 曹圭哲 이사회에서 징계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보복의 냄새가 아주 짙는데 총장께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총장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기본적인 자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지요?

○證人 曹圭哲 영어과 이상준 교수입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총장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손치더라도 총장님께서도 상당히 나는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이숙경 증인님께서 상당히 고령이시고 잘 안들리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숙경 전 이사장님을 대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證人 李淑卿 서재명 총장이십니다.

○李壽仁委員 서재명 증인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98년3월에 박승준 이사의 영구추방을 포함한 재단 개혁 또 대학 발전을 위한 선언이 공포되어서 학교의 전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徐在明 부분적이지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면 똑같은 질의를 김태정 교수 협의회 회장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이숙경 증인의 그 선언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이 전폭적이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泰定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다시 그것을 번복했을 때 이것 때문에 외대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金泰定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壽仁委員 박승준씨에 대한 처우는 14년 동안 정관에도 없는 전무이사직제를 만들어서 전권을 행사하게 했다는데 이것이 직제에도 없다는 것은 서재명 증인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관의 직제

에도 없습니까?

○證人 徐在明 직체에 없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형을 살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분이 베트남 하노이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 전무이사직제도 없는데 게다가 이사장 자격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위사칭이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徐在明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李壽仁委員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證人 徐在明 그렇지 않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어과의 김기태 교수 보고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김태정 교수협의회 회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泰定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서재명 증인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98년9월1일 조규철 총장 직무가처분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徐在明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런데 지금 증인님께서서는 현재 적합한 한국의국어대학교의 총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在明 저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기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在明 예.

○李壽仁委員 조규철 총장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咸鍾漢위원장, 朴範珍간사와 사회교대)

98년4월9일에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밝혀진 박승준 전 이사의 부정부패 사례를 보면 교비, 법인자금 부당유용에다가 편·입학비 자금 조성에다가 또 부당사용 또 법인예산 횡령,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가 허가목적외 사용, 기부금 수익 부당처리, 교직원 인사 부당처리, 학사개입, 학교법인의 대표자 행세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정부패 그리고 불법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된 27건 중에 박 전 이사께서 직접 관련된 것이 16건입니다. 전체 지적 건수의 60%에 달합니다. 이것은 박 전 이사가 더 이상 공익법인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대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된

다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在明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그만 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혼란 시기에 이런 것을 많이 목격하지만 가장 정확해야 되는 것이 옥석구분입니다. 보복적인 징계나 이런 것은 도덕적인 정당성 그리고 현실적인 정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외대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옳지 않는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점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邊衡尹 이사장님은 학교 이사회 존중, 징계위원회 존중 또 학교 총장 및 교무위원회 의견 존중 아마 이렇게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대학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니까.

거기에서 이 분께 누를 끼치는…… 자기 개인적인 보복심, 복수전 이런 따위 천박한 감정으로 이사장님께 누를 안끼쳐야 외대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겠습니까?

○證人 曹圭哲 예, 명심하고 보복적인 징계가 아니고 정서상 그 당시 학생들 또 교수들은 48명을 해임하라고……

○李壽仁委員 됐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복이 아니라 그래도 본인 자신이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학교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불만자가 있더라도 천천히 수를 줄여가면서 차곡차곡 구성원 전체의 동의 기반을 획득해 나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기본적인 인격으로 봐서, 제2건 국 위원장 그리고 다른 직책 이런 감투를 나라 전체와 거래의 장래를 위해서 아무 사심없이 맡으셨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습니까?

○證人 邊衡尹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이것은 외대 이사장의 직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예,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範珍 다음은 申樂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한국의국어대학의 분규는 李淑卿 前 이사장과 그 조카인 朴昇濬 이사와의 갈등에서 부터 발단되었습니다.

우선 李淑卿 전 이사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년 9월부터 두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직 전인 97년까지 朴昇濬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지금은 朴이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證人 李淑卿 朴이사는 제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믿던 사람들이 전부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중간 사람의 문제입니까, 朴이사 자신의 인품이나 업무수행 능력의 문제입니까?

○證人 李淑卿 그 외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

○申樂均委員 그러면 이간질한 사람의 문제이고 朴이사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證人 李淑卿 朴이사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 李淑卿 증인이 지난 1월 두 차례 이사과 교직원에게 보낸 문건중에서 朴昇濬 이사가 이사장이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호소의 편지를 낸 것이 있습니다.

朴이사가 이사장이 되려고 한다는 그 뜻을 언제 증인에게 밝혔습니까?

○證人 李淑卿 이사장이 되겠다는 말은 朴昇濬한테 전혀 못 들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뜻을 알고 그런 문건을 내셨습니까?

○證人 李淑卿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朴이사가 이사장 취임 뜻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셨다는 뜻이지요?

○證人 李淑卿 예.

○申樂均委員 그래서 교육부에 임원승인 취소 신청을 했는데 다시 4월1일자로 상무이사로 임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李淑卿 그것은 이간질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다시 그렇게 한 것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그 중간에 회계감사도 했고

교육부의 감사도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證人 李淑卿 그것은 당연히 받을 것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申樂均委員 법인 회계감사에서 朴이사가 법인 돈 유용이나 허위지출 문제가 발견이 됐지요?

○證人 李淑卿 예.

○申樂均委員 그런데 그것도 이간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朴이사 자신의 문제입니까?

○證人 李淑卿 그것은 朴이사 자신의 문제이지요.

○申樂均委員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證人 李淑卿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교육부의 이사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證人 李淑卿 당연하지 않지요. 귀가 어두워서 큰일 났는데……

○申樂均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朴昇濬 前 이사가 만나오셨기 때문에 金泰定 교수협의회 회장께 직접 물겠습니다.

98년3월30일에서 4월1일 사이에 朴昇濬 전 이사가 李淑卿 전 이사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자신의 상무이사 임명을 얻어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다시 이 임원직을 얻어냈다는 데에 대한……

○證人 金泰定 그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朴이사의 경우에 지나치게 총장선거에 깊이 관여하고 또 교수들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압박을 가하는…… 그것은 저 자신이 압박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이것은 그 당시 교수협의회도 거기에 같이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상무이사직을 얻어냈다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동의는 하십니까, 그럴 거라는?

○證人 金泰定 그럴 거라는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확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鄭圭浩 전 교수협의회 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6일에 동원육영회 관련사안에 대한 교협의 견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선 단순히 김종국씨 보좌역 임명에 대한 반

대입니까, 아니면 朴昇濬 이사의 결재권 박탈조치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의 의사표시입니까?

○證人 鄭圭浩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협에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성띠고 ……

○申樂均委員 분명하게 짧게 답을 하세요.

○證人 鄭圭浩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교수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협이 그때 하나의 단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웅성거리고 슬렁거렸습니다.

○申樂均委員 다른 설명말고요 김중국씨의 임명 반대 표시를 그 문장에 달은 것을 봤습니다.

○證人 鄭圭浩 반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결론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申樂均委員 아니요, 맨마지막에 김중국씨의 반대문건을 제가 읽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證人 鄭圭浩 그 내용에 평의회 위원님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申樂均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대답해 보세요.

이 글의 내용이 교수협의회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證人 鄭圭浩 주장할 수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긴급평의회라고 하는 이 협의회에 교수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證人 鄭圭浩 교수협의회가 아니고 교수협의회가 매년 삼백여명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0명인데 25명이 모였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25명의 뜻이지요?

○證人 鄭圭浩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단과대 교수……

○申樂均委員 그런데 이 평의회를 개최할 때 언제 소집을 하고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證人 鄭圭浩 1월6일에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소집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證人 鄭圭浩 1월6일입니다.

○申樂均委員 6일에 소집해서 6일에 개최했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鄭圭浩 그렇습니다.

○申樂均委員 그것이 보통 관례상 절차에는……

○證人 鄭圭浩 긴급회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申樂均委員 그러면 이것은 25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1명의 교수가 이것이 일방적인 발표라고 임시총회를 요구한 적이 있지요?

○證人 鄭圭浩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것은 왜 목살하셨나요?

○證人 鄭圭浩 목살한 적이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총회를 소집했습니까?

○證人 鄭圭浩 총회 소집에는 양파가 깔라져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임시교수회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申樂均委員 그후에 이들이 요구한 그 총회가 열렸습니까?

○證人 鄭圭浩 그때는 지연이 돼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申樂均委員 무슨 이유로 지연이 됐나요?

○證人 鄭圭浩 그것은 사전통보하고 전체 임시총회라고 하는 것은 5일전에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고 통보하는 기간이 우편가는 2·3일하고 통합해서 적어도 1주일에서 열흘은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래서 평교수들이 회장을 탄핵했고 그리고 334명중에 236명이 불신임한 결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證人 鄭圭浩 그것은 인정 못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회칙에는 회장을 그만두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邊衡尹 관선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선 이사진이 파견된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관선 이사장으로서 예전에 비해서 한국의국어대학교의 학사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상당히 민주적이고 상당히 평화롭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총장께서도 그럴 것이고 교수협의회장도 그럴 것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일반 직원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사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張健 동의합니다.

○申樂均委員 분명히 그렇게 발전적이고 민주적으로 ……

○證人 張 建 특히 직원사회 부분은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申樂均委員 올말이면 관선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더 안정적인 발전과 학교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어떠한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證人 邊衡尹 역시 대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申樂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範珍 다음은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 위원입니다.

李淑卿 증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李陽熙 증인입니까, 徐在明 증인입니까?

○證人 李淑卿 재단문제에 대해서는 李陽熙 실장한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李在五委員 李陽熙 증인, 저는 외대에서 준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보면서 李淑卿 증인이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朴昇濬씨가 이중조카이지요?

○證人 李陽熙 예.

○李在五委員 14년간 전권을 맡겼다가 딱 해임을 시키면서 자기 친조카 김종국을 등장시키고 또 曹圭哲씨에게는 총장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朴昇濬씨와 불화가 생기니까 朴昇濬씨를 다시 해임시켰다가 또 다시 朴昇濬씨를 복귀시키면서 자기 친조카 김종국은 해임하고 또 曹圭哲 총장 해임하고 다시 徐在明 총장을 임명하고…… 李淑卿 증인이 그렇게 전략전술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證人 李陽熙 그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의 모든 자료는 제가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답에 대한 설명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요약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물겠습니다.

구 재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朴昇濬씨가 사법처리 당했지요?

○證人 李陽熙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이러한 구 재단의 문제 때문에 현 관선이사 체제가 들어섰는데 현 관선이사 체제에 대해서 曹圭哲 총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 재단이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해임하거나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것 하고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가서 학교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과거에 있던 사람들 대량 해직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證人 曹圭哲 그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구 재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도 대체 학교를 설립했으면 건학이념에 충실해야지 이것이 무슨 가족간의 재산싸움입니까?

현 관선이사 체제에 대해서 邊衡尹 증인에게서 말씀하셔야 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증인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결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曹총장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외대 내에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현직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과 曹총장을 상대로 해서 교수들이 교수채용에 관한 갈등 등으로 해서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曹圭哲 농성이 잠깐 있다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曹圭哲 증인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李淑卿 재단의 학원복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요?

○證人 曹圭哲 지금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창립자 배우자로서 학교에서 극진히 대우해 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李淑卿 재단이 복귀해도 좋습니까?

○證人 曹圭哲 李淑卿 전 이사장님은 창립자 부인으로 예우하는 것 그리고 이사장이 아니라 명예 이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예우하는 차원이지만 직접 경영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복귀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말 아닙니까?

○證人 曹圭哲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두번째, 98년4월에 총장 직무대행하신 적 있지요?

○證人 曹圭哲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당시 朴昇濬 전 이사를 공금횡령, 업무방해, 편·입학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지요?

○證人 曹圭哲 예, 고발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曹圭哲 예, 그렇게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당시에 검찰수사, 교육부 특별감사에 의해서 구 재단 이사진이 전면 승인 취소되었지요?

○證人 曹圭哲 李淑卿 이사장님 그리고 朴昇濬 이사는 승인취소, 다른 분들은 전부 해임입니다.

○李在五委員 李淑卿 이사장과 98년4월1일에 만나서 직원 인사발령에 동의하여 날인하고 난 후에 4월6일자 인사발령 기안지 원본을 파기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曹圭哲 그것은 약속의 뜻으로 날인한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학교에 가서 '내일 교무위원회가 개최되니까 그때 의견을 물어보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증인들이 낸 자료를 다 읽어 보았어요.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徐在明 교수의 총장 발령을 거부하고 있지요?

○證人 曹圭哲 4월10일에 재단 이사회가 원천적으로 구성상 또 절차상 결의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지금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총장을 반대측이라고 보아도 좋겠지요.

직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부정입학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曹圭哲 전혀 음해이고 사실무근입니다.

○李在五委員 설립자 조카 김종국씨를 상임고문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曹圭哲 아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학교 안정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고문으로 제가 임용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부총장급 대우를 해주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證人 曹圭哲 부총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학교발전기금에 내겠다는 뜻으로 해서.....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해 보면 구 재단측에는 朴昇濬 전 이사의 부패성과 부정, 李淑卿 전 이사장의 무능력, 외대내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 재단측이 학교경영 능력이 없다

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徐在明 총장, 李陽熙 증인은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陽熙 못합니다.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曹圭哲 총장!

현 관선이사 체제에 대해서 외대내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너무 많이 표출된다. 그리고 징계 교직원들과 관련되어서 파면된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권 남용의 이유로 전원 복직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 불복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證人 曹圭哲 예, 그렇게 하고 가능한 화합차원으로.....

○李在五委員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證人 曹圭哲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불법적 직제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證人 曹圭哲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입니다. 학교정관에 있는 대로입니다.

○李在五委員 편파적 불공정 인사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證人 曹圭哲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邊衡尹 증인!

이 자리에서 만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평소에 이사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의 거두이신데 그냥 학계에서 후진을 위해서 조용히 계시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사장님께서 제2건국 위원장이다, 대통령 정책자문위다, 대학교 이사장이다 이런 것을 맡으심으로 인해서 학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衡尹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사회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사회봉사 차원으로서 좋은데 개인의 학문발전에 대해서는 손해가 많으시지요?

○證人 邊衡尹 많지요.

○李在五委員 저 개인으로는 이사장님이 그냥 직책 있는 것 제2건국이요 뭐고 하지 않고 조용히 학문만 하시고 우리들로부터 오래오래 깨끗하게 존경받는, 남들로부터 구설수에 안 오르고 깨끗하

게 존경받는 학자로 남기를 저는 원합니다.

○證人 邊衡尹 감사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결론적으로 외대의 문제에 대해서 구 재단이 이것은 다시 복귀해서 朴昇濬 이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현재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해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외대가, 저는 邊이사장님 체제가 들어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떠나서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설립자의 유언에 따라, 설립자가 유언한 것 있지요?

‘직계비속에게 일정한 비율의 이상을 구성하게 하여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장손 김경수 승계, 차남 김범준에게 능력의 적정 일을 하도록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니까 외대문제에 대해서는 구 재단이 ‘내가 주인이다.’ 복귀할 것도 없고 새로운 임시이사 체제가 점령군처럼 완전히 숙청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範珍 다음은 盧武鉉 위원, 신문하 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전 이사장, 전 총장, 前字가 붙은 분들은 구 재단에 관여하시던 분들이신데 총장으로 선임되셨던 徐在明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관선이사 선임이 있기 전에 대체로 朴昇濬 이사는 분과 서로 뜻을 맞추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재단운영이나 학사운영에 서로 상의하고 하신 것 맞습니까?

○證人 徐在明 그런 적 없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근무를 같이 한 관계 이상은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평소에 같은 교수 중에서도 가까이 업무를 협의하거나 상의하거나 일을 돕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證人 徐在明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꾀박 받았습시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朴昇濬씨는 어차피 이사로 돌아올 수 없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든 전 재단 이사진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리가 있어서 물러난 것 맞지요?

○證人 徐在明 예, 맞습니다.

○盧武鉉委員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닙니까?

○證人 徐在明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직접 당사자이든 아니든 다 책임이

있어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관선이사 선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證人 徐在明 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어떤 점이요?

○證人 徐在明 외대 분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진의 사소한 불화를 구성원들이 확대 변질시켜서 분규가 3개월 내지 5개월 갔는데 그때 교육부가 전면 이사승인 하고 관선이사를 내보낸 것은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개입이 잘 되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 증인의 의견은 그렇고 사실상 학교운영에 있어서 朴昇濬 이사가 부정 뿐만 아니라 전횡도 있었습니까?

○證人 徐在明 있다고 보아집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독단적 운영에 대한 반대세력이 형성되게 마련 아닙니까?

○證人 徐在明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학내에 반대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까?

○證人 徐在明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관선이사로 선임되신 邊衡尹 이사장님이 반대세력과 결탁되어 있거나 본래 반대세력의 일원으로 또는 관계되는 사람으로 여기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보십니까?

○證人 徐在明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학내에 좋던 나쁘던 파벌이라고 할지 세력대립이 있는데 邊衡尹 이사장님은 중립적인 인사인 것은 맞습니까?

○證人 徐在明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朴範珍간사, 威鍾漢위원장과 사회교대)

○盧武鉉委員 결과로서는 朴昇濬 이사를 반대하는 쪽 또는 李淑卿 이사장을 반대하는 쪽 그 세력이 邊衡尹 이사장이 오고 난 뒤에 학교 내에서 좀 더 힘이 강해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證人 徐在明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세상만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비리 이사회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으로 쫓겨나면 반대쪽에서 자연히 발언을 크게 하는 것

이 세상 일반적인 이치 아닙니까?

○證人 徐在明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징계위원은 누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證人 徐在明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징계절차에 관해서는 독립해서 절차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證人 徐在明 법인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실제로 邊衡尹 이사장이 오셔서 독단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까?

○證人 徐在明 저는 邊衡尹 이사장이 오시고 한 1개월 후에 징계파면을 당해서 학교행정에 전혀 아무 것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답변하시기에 마땅한 위치에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徐在明 그렇지요, 전혀 모르지요.

○盧武鉉委員 그러면 邊衡尹 이사장이 직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싶은 분 있으면 아무나 답변하세요.

○證人 李陽熙 李陽熙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국가의 최고노동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복직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잘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李陽熙 그렇지만 지금 그분의 위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그 점은 의견으로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교내 세력간 대결이 전 이사회체제 쪽, 말하자면 이런 저런 의논을 같이 하고 손발을 맞추고 호호하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전 이사장과 함께 손발을 맞추고 했던, 어떻게 그때 가깝게 지냈고 조금이라도 발언권이 나 영향력이 컸던 분들이 지금 이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하겠다고 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證人 徐在明 제가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盧武鉉委員 예, 답변하십시오.

○證人 徐在明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대학의 구 재단 이사장이 있을 때 외국어대학의 교수들과 보직교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200명 가량 됩니다. 그분들이 아주 협력적으로 잘 해오다가 이사장님과 朴昇濬 이사라는 사람 간에 불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두 패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사람 편에 서서 그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교수사회가 기회주의와 배신으로 만연되어 있는 풍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盧武鉉委員 뒤에 개탄하는 부분은 안 들어도 되고 평가름이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證人 徐在明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어떻든간에 구 재단이 비리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되면 거기서 손발 노릇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재단쪽의 복귀를 계속 바라게 되고 잔당이라고 하는 세력은 자연히 이쪽에서 구박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徐在明 일반론으로 盧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盧武鉉委員 개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證人 徐在明 저를 그 카테고리에 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10년간 외국어대학에서 일체의 보직을 한 바가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제가 그 동안 시간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넘길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마는 그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재판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하는 것을 독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金日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金日柱입니다.

鄭圭浩 전 교협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임시이사 진영과 구 재단측과의 화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圭浩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노조위원장 張建 위원장께서는 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張建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李陽熙 전 기획실장께서는 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陽熙 그것은 분쟁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세 분에게 다시 물졌는데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鄭圭浩 증인!

○證人 鄭圭浩 아까 盧위원님께서……

○金日柱委員 간단히 해주세요. 있습니까?

○證人 鄭圭浩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金日柱委員 화합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圭浩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張建 노조위원장!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張建 예, 노력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현 교협회장인 金泰定 증인은 노력해 보셨습니까?

○證人 金泰定 예,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金日柱委員 참 좋네요.

제가 邊衡尹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학자로서도 훌륭한 분으로 재·덕을 겸비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2전국위 위원장에 추대할 때 사양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사양은 물론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래도 하고 싶으셨군요?

○證人 邊衡尹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日柱委員 또 한가지 물졌는데 외국어대학 임시이사장으로 얘기될 때 거절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외국어대학 이사장 때도 일단 저로서는 마지막에 가서 발표했지요.

○金日柱委員 안 하겠다고 했는데 李海瓚 장관이 강력하게 권하는 바람에 가셨어요?

○證人 邊衡尹 그랬지요. 제가 뭘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외대에 가서 지금 이사장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證人 邊衡尹 급여는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한 달에 받으시는 돈이 얼마입니까?

○證人 邊衡尹 300만원 가까울 것입니다. 넘지는 않습니다.

○金日柱委員 차는 어디 것을 이용합니까?

○證人 邊衡尹 차는 외대 것이지요. 외대하고 관계될 때는 그 차를 씁니다.

○金日柱委員 제2전국위하고 양쪽 일을 하시느라 바쁘시겠네요?

○證人 邊衡尹 제2전국위는 일주일에 화요일 이후만 갑니다. 그리고 비상근입니다.

○金日柱委員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유혹을 하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대학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마는 상당히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행정부나 정계 쪽에 들어와서 그냥 망가지고 말아요. 과거에 서울대학에 계시던 모 철학교수도 제가 저분은 참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 분도 말년에 가서는 기울더라고요.

저는 邊 박사께서도 그런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흠탕물에 가서 끼셨어요?

○證人 邊衡尹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 얘기를 한마디 하면 그것은 자문기구의 장이올습니다.

○金日柱委員 자문기구는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대학 이 흠탕물에 왜 끼어들어 가셨어요?

○證人 邊衡尹 이사장을 왜 했느냐는 말입니까?

○金日柱委員 예.

○證人 邊衡尹 이사장을 부탁하니까 했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수가 자기 있는 학교도 잘 되게 하고 다른 학교도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저도 올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邊衡尹 증인께서는 曺圭哲 총장의 자녀넷이 외대를 졸업한 것을 아시지요?

○證人 邊衡尹 예,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때 李海瓚 장관이 이분 자녀들의 입학관계에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총장으로 추대해서는 이 어려운 때에 수습이 어렵다고 해서 추대를 반대했지요?

○證人 邊衡尹 예.

○金日柱委員 그런데 왜 曺총장을 취임시켰습니까?

○證人 邊衛尹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아마 曹총장 자제…… 저는 절대로 曹총장이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직계자녀들에게 10%인가 20%인가 자기 시험 본 것에 그것을 가산해서 넣어 주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서 아주 바닥이었고 도저히 외국어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었답니다. 그래서 학내에서 얘기가 분분했다는 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관계하는 대학에 제 아이가 분할모집에 왔었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 것도 몰랐어요. 결국 낙방을 하고 말았는데 아마 직원들이 알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가 1호로 터져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랬으면 예비도 망신당했을 것이고 애도 망신당했을 거예요.

저는 공직에 종사할수록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이분을 총장으로 추대한 모양인데 여러 모로 문제가 많고 이번에 자료수집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증인께서는 연세도 대단하시고 이제 12월이면 끝나는데 구 재단과 화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퇴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衛尹 저는 화합이 된다면 화합을 하지요. 되겠느냐가 문제지요.

○金日柱委員 邊박사님께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證人 邊衛尹 노력을 해봐야지요.

○金日柱委員 어제 이 안이 얼음 녹듯 녹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대구대학 사건입니다.

제가 대구대학 총장한테 비슷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구 재단의 이사장님 큰 자제가 아주 똑똑하고 사람이 훌륭해서 내가 자주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 화합하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교수협의회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사건은 퇴출 당했던 전 교협회장이예요. 불이익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인데 아마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는가 봐요. 복직은 아직 안 되었는데 가장 불이익을 당한 제가 들어가서 가슴을 열고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구대학 증인들 모두하고 악수했습니다.

저는 꼬치꼬치 따지지 않았습니. 큰 테두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최고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가 좀 저속할지 모릅니. 시장 잡배들보다 더 험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화합하겠다, 그래서 머지 않은 장래에 화합해 놓고 저를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대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앞장서세요. 정말 지성인다운 모습을 보이세요.

외국어대학은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남미, 중동을 쭉 다녀봐도 외국어대학을 일찍이 설립하지 않았던들 우리가 중동에 진출할 수 있었겠느냐, 또 아시아 쪽에 진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헌한 대학이예요. 구 재단이 그만큼 공헌한 거예요.

개혁도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덕이 앞서야 돼요. 재와 덕이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것이지 칼로 된다는 생각 절대 버리세요.

제가 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權力之合은 野合입니다. 역대의 칼 휘두르는 사람한테 요즘 어떤가 한번 물어보세요. 둘째 金力之合은 鳥合입니다. 까마귀 鳥字 오합니다. 돈이 있다고 모여 들었다가 돈이 다 없어지면 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思想之合은 團合입니다. 외국어대학의 설립이념 속에 합쳐져 가지고…… 제가 제1호로 외국어대학 방문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어느 대학이 서반아어를 가르쳤으며 어느 대학이 태국어 가르쳤습니까? 그런 명문대학입니다. 훌륭한 선생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되었는데 다 후배들 아닙니까? 놀라운 모습을 보이시고 외국어대학 교정에 선생님이 화합시켰다는 비석이 하나 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洙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안상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외대분규는 이숙경 전 이사장이 노령으로 직무능력이 부재하고 박승준 전 이사의 야욕으로 인한 비리와 부패로 출발해서 조규철과 서재명 총장의 임명과정에서 불법성이 전개되고 그래서 관선이사체제가 들어섰으나 최근에 교수임용과 새로운 이사진의 독선으로 인해서 학내 일부 반발을 초래하는 등 파행으로 운영되므로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전 구 재단 측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변호할만한 분이 계시는지요? 변호할 생각이 있는 분은 잠깐만 해보세요.

○證人 李陽熙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맞고 상당 부분은 그것보다는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저희가 서로 화합한다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적인 예로 변형운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단 한번도 전 이사장님을 찾아뵈신 적도 없고 식사초대 한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화합이 가능하겠습니까?

○安相洙委員 말씀중이지만 변형운 이사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證人 邊衡尹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하지요. 왜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安相洙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깐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구 재단 측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변형운 이사장께서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덕목을 규정할 때 민주개혁적이고 교육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조규철 총장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런 덕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지 먼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證人 曹圭哲 저는 풀뿌리식 민주화를 행정 그리고 의견수렴의 목표로 삼고 학교를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분과위원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재단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98년4월10일 이사회 의결사항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證人 曹圭哲 그렇습니다.

○安相洙委員 이사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언제 누구에게 하셨지요?

○證人 曹圭哲 교육부장관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사

실이라도 이사회가 일원이 아닌 부총장 겸 총장직 무대행이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를 연기 요청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曹圭哲 그 당시 만약에 이사회가 강행되어서, 그때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재단이사 특히 이숙경 이사장님이 요구하는 박승준 이사의 복귀를 위한 선행이사회 하는 것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安相洙委員 제가 왜 이야기를 여쭙어보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독약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규정을 지키는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정잡배들 같으면 이런 이야기 묻지 않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입학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저희들은 선거에 나가면 3대 전 것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고 결국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양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점이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형운 이사장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정규호 증인이나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이사장께도 잘 말씀드리고 또 전 서 총장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두 측에 대해서는 말씀을 줄이고 저는 김태정 증인에게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번에 사립학교법 통과에 대해서 개악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을 교육 5적, 7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證人 金泰定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泰定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證人 金泰定 알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위원회 통과되고 국회 통과되고 대통령이 재가하고 그러면 그 재가하신 대통령은 됩니까? 대통령한테까지 재가가 되어야지 법으로 통과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몇 적 중에 하나입니

까?

○證人 金泰定 대통령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것은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證人 金泰定 교육관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을 저희가 비판하는 의미로서 7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安相洙委員 교수 사회에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까?

○證人 金泰定 흔히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요.

○安相洙委員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개악이라고……

○證人 金泰定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비판하는 의미로 쓰는 상징어로서 선택한 것입니다.

○安相洙委員 5적 혹은 7적의 해당 위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이시겠다고 그랬는데……

○證人 金泰定 저는 직접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저는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표현의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지성인들이 우리 사회를 자꾸 각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꾸 아우르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틀림 없이 법 절차를 통해서 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안 좋다고 보고 더군다나 김태정 교수협 의회장은 신입 관선 임시이사 측에서 학교를 좀더 잘 하려고 애를 쓰는,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민주적이고 개혁적이어야 되고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金泰定 고맙습니다.

○安相洙委員 저는 변형운 이사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학의 태두였을 뿐 아니라 지난 어두웠던 시절의 그야말로 행동하는 지성으로 우리 모든 지성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대학의 분규해결 같은 일 보다 앞으로 더 잘 하실 수 있는 일이 많고 이런 일들은 또 적합하게 잘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장님이 계셔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따님을 제가 그룹지도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따님하고 저는 그런 개별적인 특수관계도 있는데 정말 선생님이 이제 두 달 남은 동안에 아주 열심히 하셔서 가지고 다들 후배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라도 정권적 차원에서 안 되고 제2건국위원회 그것 잘못하면 나중에 오해받습니다.

정말 서울대학에서 사표로 계시다가 모든 사람의 지성으로 남아서…… 제가 요전에 어느 분한테도 표현했지만 정권은 유한한 것입니다. 민족이 영원한 것입니다. 민족의 사표가 되십시오. 고인의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證人 邊衡尹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朴範珍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박범진 위원입니다.

조규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대의 경우에는 교수와 사무직에 대한 징계권이 정관상 재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있습니까?

○證人 曹圭哲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징계는 재단이사회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사무직은요?

○證人 曹圭哲 사무직은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처장 등 해서 학교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일반적으로 대학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단은 학교 운영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외대도 상당히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왜 학교에다 안 맡기고 재단이 가지고 있지요?

○證人 曹圭哲 그것은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상 불가피하고 제가 월권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朴範珍委員 제가 총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올 때는 저는 총장이 앞장서서 교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지파와 반대파 이렇게 구분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마치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지지하는 국민만을 대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장이 되면 대학공동체에 몸담

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조금 외대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경중을 가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총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證人 曹圭哲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사장님이나 총장은 관여하지 않고 이사장께서 그것을 거부하든가 받아들이는 그 두가지 중에서 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리고 외부에서 느끼지 못하는 본인한테 신문 그리고 대질신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분들도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습니다.

○朴範珍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께서는 징계위원회 소관이고 이사장은 전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면 해임된 사무직 가운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하도록 결판이 났습니다. 그것을 대학내에서 수용하지 아니하고 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曹圭哲 그것은 열다섯명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여섯명만 다시 복직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화합차원에서 여섯명은 받아들였습니다. 마는 아홉명은 관선이사 파견되고 나서 계속 학교를 혼란하고 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朴範珍委員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징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조직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적법한 법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결정이 나면 그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만 승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같은데.....

○證人 曹圭哲 아닙니다.

곧 판결이 나고 가능한 본인이 화합할 자세라고 그럴까 개선의 정이 있으면 저는 포용하고 이사장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아시다시피 명문사학으로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발전하고 또 질을 높이고

또 금년 12월14일 대대적인 모금행사를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지만 그간 李淑卿 이사장도 여러 번 만나뵈고 徐在明 교수하고도 한차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 않느냐 입장이 틀려서 그렇다 등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徐在明 교수를 포함해서 여기 징계받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만나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朴範珍委員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25때 남침해서 수백만명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하고도 지금 대북포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내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절대선과 절대악의 싸움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淑卿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대의 분규사태는 재단내의 암투와 갈등 그리고 비리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책임있던 분은 사법처리도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어느 조직보다도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이사가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淑卿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朴範珍委員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은 깨끗하지 않는, 비리가 있는 그런 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李淑卿 전 재단 이사장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 제가 뭐가 하나 빠졌는데 1·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金貞淑委員 徐在明 증인은 임시이사가 내려올 당시에 총장이었는데 邊衡尹 이사장께 총장으로서

어떤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총장 본인이 총장 신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서를 낸다든가 아니면 강하게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徐在明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98년8월24일 인사청문회하니까 출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갔을 때에 서면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徐在明'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邊衡尹 이사장은 '당신을 총장 자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후보자격으로 불렀으니가 이 총장 직함을 쓰면 안된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보고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제6대 총장입니다 단지 집무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무 못하는 것은 학내 사태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여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런 얘기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도중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외국어대학을 소개해 드리고 관련이사님들께 앞으로 외국어대학을 수습하려면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임시이사가 내려가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뭐냐 하면 총장이 분명히 선임돼서 보고가 끝났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통보를 받았고 또 자꾸 파동이 나니까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 인터넷에 뭐라고 답을 주었느냐 하면 '외대 총장은 徐在明이다' 그것이 끝이에요. 지금 임시이사 내려가서 다시 총장을 다시 뽑는 회의를 하기전까지요.

그런데 임시이사 해결을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을 안하고, 사임을 받는다거나 해임을 한다거나 하면 이사회에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넘어간 것이 지금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邊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의 태도…… 물론 연세가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배적이고 권위적이고 국회에서 아주…… 국회의원이 지금 나이가 젊다고 邊이사장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답변하는 태도로 볼 때 외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안보고도 짐작을 해요. 이

렇게 해가지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曹圭哲 총장이 '前이사장에 대한 예우를 한다' 뭐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前이사장과 한번이나 상의하고……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車까지 다 뺏어가지고 현재 이사장이 타고 다녀요.

그리고 邊이사장께서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징계위원장이 다 했다' 고 하시는데 이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기 권한이 다 있으면 안보고 도장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매월 수백만 원씩 받아 가십니까?

최고급 차량까지 지원받고 말이에요.

이 이사장 자리라는 것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는 수습하라고 내보내는 책무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정부들어서 덕성여대에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이사장으로 가서 있지요. 한성대학에 있지요. 이런 식으로들 전리품이 아니에요.

아무튼 邊이사장께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曹圭哲 총장님은 지금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가 무지하게 많이 와서 제가 밤을 새서 읽어봤어요. 3월30일 선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주최를 해서 사인을 하시고, 3월30일 선언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민주적이라는 미명아래 학교의 세부적인 자금운용 내용 이런 것을 총학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 이사회 구성이나 역할분담, 이사장의 직무수행 형태, 교수 및 직원의 보직임명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다 특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주인없는 해방대학화시키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런 선언에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학생들 부정으로 특례입학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실 점이 많아요.

그리고 왜 부총장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이제는 좀 반성하시고 화합하시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曹圭哲 총장님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徐在明 지금도 총장이시지요. 아직 소송중이니까.

두 분이 마지막으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어떻게 외대를 회생시킬 것인지 한 마디씩 좀 해주세요.

○證人 曹圭哲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

육부의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인데 합법적인 교육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徐在明 교수가 지난 9월1일 관선이사로 8월24일 제가 총장선임되고 나서 즉시 9월1일 법원에 총장업무 방해.....

○**金貞淑委員** 徐在明 교수가 파면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證人 曹圭哲** 그래서 교육부에서 합법적인 총장은 曹圭哲이다.....

○**金貞淑委員** 지금은 합법적이지요.

○**證人 曹圭哲** 그리고 법적인 사법부에서의 판결도 합법적인 총장은 曹圭哲이다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는 분명히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교육부의 감사에서 다 통과된 얘기이고

○**委員長 咸鍾漢** 曹圭哲 총장님, 됐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목조목 못 따지는데 보충질의 때 가지 마세요. 그리고 徐在明 교수도 제가 소감을 물었지요?

○**證人 徐在明** 제가 訴를 제기한 것은 9월에 총장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기각된 것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訴를 제기한 것은 임시이사회에 제가 요청하기를 '새로 총장을 뽑으시려면 저를 해임결의부터 하고 뽑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살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임시이사회회의 두분이 저보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사의를 표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외국어대학에서 평생 동안 봉직해 온 사람인데 그 재단이 임명해 주고, 학교를 수습하라고 만든 총장이 어떻게 수습도 안 하고 그대로 사표를 냅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그날 曹圭哲 총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사립학교법 53조 2항의 위반이다 그러니 관선이사회가 총장선임 결정한 것을 취소하는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래서 제기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 소송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저는 그 소송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저를 '징계한다고 출석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총장후보였고 또 총장으로 선임된 사람을 징계한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징계사유가 '총장 사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을 사칭해 본 적도 없고 또 총장을 집행해 본 적도 없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서 서면답변으로 "저는 외국어대학이 화합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외국어대학의 총장과 이사장님이 직원과 교수의 징계를 화합차원에서 마무리 지어준다면 소 제기한 것을 취하시키고 동시에 외국어대학이 徐在明이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고 이럴 일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말에 어른은 모름지기 풀베는 사람, 나무 하는 사람 얘기도 귀기울여 듣고 풀소리 나무소리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서로 귀를 막으시고 서로 듣지 않으시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행선을 긋고 양쪽이 똑같이 가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회에 또 이런 대화도 우리 국회를 통해서 서로 나누시고 다른 분의 말씀도 서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원수들도 아닙니다. 외계인도 아닙니다. 똑같이 외국어대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바로 세우려는 분들끼리 왜 대화가 안 통하겠습니까? 의사소통 잘 하셔서 이 문제를 화합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외국어대학교 관련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대학교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핵심증인인 崔元榮 전 이사장은 해외체류중이고 李吉女 현 이사장은 세미나 참석을 사유로 또한 金容珍 전 이사장은 신병치료를 사유로 해외에 체류중이라 불참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국정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오늘은 경원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말고 바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했다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관련 증인들께서도 바로 이어서 진행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처음 발언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壽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 위원입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에 관해서 장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 이사장님께서 제가 조사한 한 불법적 학사개입 또 횡령, 회계부정 등등 전횡과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장관님이 알고 계십니까? 단답으로 하십시오.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러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이사장님께서 고등교육법 제6조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학칙 개정권을 이사장의 권한으로 만들어 놓고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장을 해임하고 고등교육법 제17조와 시행령 제7조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대우전임교원 임용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원들을 해임시키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공금횡령, 회계부정 이런 것 등등은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의 물적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상 과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것은 바로 부정부패 행위에 해당되는데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여기에 자세한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반적인 사학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토론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李壽仁委員 적어도 장관님께서 다른 것은 말고 저희들한테 현안보고한 수준으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7,500만원의 국고지원 중단이라는 아주 가볍기 짝이 없는 재정제재 이 선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문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세밀히 조사하면 불법 부정이 판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오히려 교육부는 면죄부 감사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심각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李在五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양자를 동시에 퇴진시키는 방안 이것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이 검토해서 가지고 이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감안해서 가지고 이 한 가지는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로 시간이 짧으니까 한국의국어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주 특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徐在明 교수와 장관님께서 사돈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접사돈입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장관님께서 반드시 알고 이것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된 朴昇濬 전무이사와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李壽仁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김성동 위원장이

朴昇濬 전무이사와 아주 밀착한 관계라는 거의 유착에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교육부 내부에서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외국어대학 교수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 상황은 현재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 점도 조사를 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李壽仁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邊衡尹 이사장이 취임하신 뒤에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징계 문제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이사장을 보좌해야 될 총장 및 이사장이 매우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邊衡尹 이사장 체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상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邊衡尹 이사장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육부 담당과장이 장관님 지시라는 명목 아래 노조위원장, 기타 등등 교수들 만나서 邊衡尹 이사장을 갈 듯한 발언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와서 분규대학의 문제에 대해 영남대학, 조선대학 등 전부 다 담당과장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李壽仁委員 다른 것은 관두고 최근에 그것을 직접 지시하셔서 이사장을 바꾸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는데 제 자신이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그렇게 하세요.

○李壽仁委員 여기 노조위원장 계세요?

○證人 張建 예, 여기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證人 張建 7월21일에 김효겸 과장을 만났습니다.

○李壽仁委員 만났을 때 그 말의 의미상 邊衡尹 이사장을 갈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성립시켜야 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張建 예,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것을 명확히 담당과장한테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李壽仁委員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申樂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교육부 분규대학 현안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신학대학의 범인이 종교재단이어서 교육부의 개입보다는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학내 구성원 합의에 의한 자율해결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신학대학의 분규가 종교 분쟁인지 학내분규인지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종교재단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교육부가 할 태도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학교, 특별히 대학교에서의 자율성은 굉장히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모든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교육부가 최대한으로 존중하시기를 바라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칫 방관 내지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셨지만 정말 그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나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화합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불화한 곳에 화합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의 문제가 불화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하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나 비리하고까지 타협을 해서 화합이 되는 것을 해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려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학교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분위기는 화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許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문제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장로하고 목사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는 따로 따로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나가야지 하나님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자율로 하지 말고 앞뒤 잘 조절해서 화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분쟁하는 대학에서 목사가 나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분쟁을 가르칠 것입니까? 차라리 정 안 되면 폐교해 버리세요. 정말 그 대학교를 되살릴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처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어대학교는 이제 이사장님이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이사장님하고 내가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정말 여태까지 하던 일 잘 처리해서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잘 하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2개월밖에 없지만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때까지 눈물 흘린 사람들 전부 불러서 쓰다듬어 주고 다 화해해서 이사장님이 나가실 때 모두 박수치고 학생들이 도열해서 잘 가십시오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육부에서 생각해서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나갈 적에 명예스럽게 화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선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저는 우선 장관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국회의원님들 여러분이 걸려 있는 신상문제에 대한 신상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다 노출되었고 장관께서 충분히 파악하셨을 테니까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어서 못했는데 李陽熙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지금도 李淑卿 전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려고 생각합니까? 단답으로 하세요.

○**證人 李陽熙**; 예, 그 분은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설립자인 李淑卿 이사장 본인이 이

사장으로 복귀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까?

○**證人 李陽熙** 예. 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아니, 우선 본인이……

○**證人 李陽熙** 본인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李在五委員** 지금 李陽熙 증인이 보기에 李淑卿 전 이사장의 연세로 보나 판단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재단에 복귀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證人 李陽熙** 이사회가 아홉 분이나 되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朴昇濬 전 전무이사라고 그랬습니까?

○**證人 李陽熙** 예.

○**李在五委員** 재단에 전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證人 李陽熙** 그것은 돌아가신 설립자께서 임명을 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朴昇濬 전 이사는 비리 혐의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으셨지요?

○**證人 李陽熙**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李在五委員**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도 그 사람을 또 재단에 복귀시킬 생각입니까?

○**證人 李陽熙**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이에요? 李陽熙 증인이 나이는 젊지만 보니까 구 재단의 상당한 실세 같은데 어떻습니까?

○**證人 李陽熙**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朴昇濬씨가 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李淑卿씨를 대리해서 다시 재단에 복귀할 생각이 있습니까?

○**證人 李陽熙**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李陽熙 증인의 판단이 어떤지, 그렇게 해도 좋든지 안 좋든지 말을 해보세요.

○**證人 李陽熙**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李陽熙 증인!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대학은 설립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설립자의 건학정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단 설립을 해놓으면 그 대학은 공익을 위해서 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고 대학은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건학이념을 내 가족의 명예를 걸고 후세에 길이 남기겠다고 하는 것이 설립자 정신이지만 내가 설립했고 내 재산을 투여했으니까 내 사유물 챙기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證人 李陽熙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부패하고 무능한 재단은 설립자로서 명예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내 사유물이니 내가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金泰定 증인!

이것은 원래 제 질의항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부분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휴식시간에 모여서, 어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명의 동료위원과 한 분의 장관의 명예가 걸려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金泰定 증인께서는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證人 金泰定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지난번 교육관계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해서 통과되었고 법사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합의를 해서 통과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일단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이 법을 거부하느냐 공포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협이나 시민연대에서 대통령에게 이 법을 거부해 달라고 청와대에 진정한 일이 있지요?

○證人 金泰定 예,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공포가 되었지요?

○證人 金泰定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과정에서 이른바 교협이나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장관과 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절차로 보면 아주 최종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법안들이 아니고 처음의 원안이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되면서 정부의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단 한 사람의 반대토론도 없이 통과되었고 이 법의 시행 여부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판단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泰定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심한 사립대학의 학내 분위기를 한번 훑어 봤습니다.

특정대학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상지대학과 대구대학은 목소리는 큰데 실제 학내 분위기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특히 대구대학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대의 경우는 학생들이나 교협이 밖으로는 조용한데 제가 대학에 가보니까 분규 사립대학 중에 가장 많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가장 많은 벽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비리재단 복귀 허용 국회 교육위,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끼리끼리 날치기 통과 교육악법 반대한다', '외대 공적 朴昇濬을 비호하는 국회 교육위 해체하라', '그 놈이 그 놈이다 속히 국회 교육위 해체하라', '교육개혁 가로막는 金德中은 퇴진하라' 등 많습니까마는 제가 대표적으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朴昇濬을 비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泰定 직접적으로 비호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교육관계법, 특히 사립학교법이 개악됨으로 해서 구 재단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제 말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증인이 생각하는 법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에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2년 끝나면 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구 재단이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외대 공적 朴昇濬을 비호하는 국회 교육위 해체하라'

그러면 오늘 증인이 여기 와서 쪽 들어보셨는데 우리 교육위 전체가 朴昇濬을 비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泰定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저도 학생 때, 또 그 이후에도 많이 운동을 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후회해 본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대에서 수십 종의 유인물들을 수거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성명에서 '교육악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의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스스로 천명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진정으로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혁적인 교육관계법을 다시 마련하라' 이것은 연대회의에서 공포거부를 요구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證人 金泰定**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교육 7적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 사진하고 같이 된 유인물 끝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 그 다음에 홈 페이지, 국정건의사항, 민원접수, 대통령께 편지 쪽해서 그 밑에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의 법안심사위원회에 참가했던 사람과 또 정부 측의 장관과 대통령을 함께 묶어서 규탄하고 있는데 법 자체는 잘못이라고 규탄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것은 법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잘 안 되었다 규탄할 수 있는데 그 법의 책임을 대통령을 포함해서 특정개인들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내용이 잘 되고 잘못 된 것은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내고 비판을 하고 다시 개정하라고 하고 재개정 서명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이미 국회 전체에서 통과하고 현실적으로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그 책임을 특정인들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泰定** 특히나 교육관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그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잘 한다 잘못한다는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립대학의 의견과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적

으로 규정한다든지 무슨 몇 적이다, 몇 적이다 더구나 거기에 관계되는 장관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을 특정하게 그냥 왜 국회가 이것을 잘못했느냐, 왜 교육위에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들을 지칭해서 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는 이것은 그렇다면 국가도 햇볕정책을 합니다. 그러면 햇볕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적과의 동침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국가의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金泰定**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李在五委員** 별개의 사안입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쪽 감사하는 현황을 보시고 지금도 교수님께서 그러한 몇 적이다 몇 적이다 이렇게 규정했던 것과 지금의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金泰定** 저희들의 원래 목적은 교육관계법이 일단 개악되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라도 민주적으로 재개정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비판적인 의미로 7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지난 번 9월9일 공청회 때에도 그랬고 오늘도 교육위원님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크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마는 이 연대회의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도 그 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대구대학교 상지대학의 교협 회장님들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교육위원회에 와서 오랫동안 회의하는 것을 참석해 보고 저희들의 표현과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자격이 아니고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으로서는 성명서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악 법안에 참가한 교육위 위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통한 광범위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선언적 의미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證人 金泰定 낙선이라는 용어는 저는 쓰지를 않았고 또 그런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쓰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이 신문에 교수님 사진하고 인터뷰라고 쪽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절에 그 당시에 우리는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용어도 우리가 썼습니다. '살인마 전두환 구속 처벌하라' 또 '박정희 독재자 물러가라' 이런 용어도 썼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이나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를 잘 하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전체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특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계속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교육법 제·개정에도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그리스도신학대학의 내용은 원래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었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그리스도신학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재산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잘만 운영하면 건학정신을 살리면서 참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현 재단이사장 이하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태들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 내용을 낱낱히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리스도신학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1차 단계로 특별감사를 파견을 해서 대학의 실태를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조치로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법인 학교이기 때문에 관여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비리를

목과하겠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파견해서 학교를 정상상태로 놓는데 주저하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아까 미진한 것이 있어서 외국어대학 이양희 증인에게 하나 물겠습니다.

98년 초 이숙경 이사장이 시행한 법인 회계감사 결과 법인 공금유용 등 비리가 드러나 2월18일 징계 파면 되었지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證人 李陽熙 서류상으로 이사장님은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薛勳委員 글썽 파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證人 李陽熙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薛勳委員 그러면 징계파면을 서류상으로 하지 라디오 광고를 합니까?

○證人 李陽熙 그러나 이사장님 뜻이 아니고……

○薛勳委員 알았어요. 됐어요. 98년5월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법인 공금 유용 등으로 퇴직불문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李陽熙 있습니다.

○薛勳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金貞淑 위원 신문하세요.

○金貞淑委員 교육부에 묻습니다.

당시에 이숙경 이사장이 지적받은 사항이 타 대학의 경우에 비추어서 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행위였다고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일관성이 결여된 고등교육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내 분규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은 분규가 나서 몇 년씩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수들 학생들 할 것 없이 고통을 받아도 임시이사를 몇 년씩 안 내려보내는가 하면 또 어떤 대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위대문제는 내부에서 분규가 나가지고 갈등이 나서 시작이 되었지만 학내 분규 없는, 파벌 없는 대학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대학이나 다 있어요.

어쨌든 박승준 이사가 내부에서 부패를 저질러서 고발 당했으면 그 사람 취소하고 고치는 것을 보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관선이사를 내려보냈어야지 다른 대학하고 균형이 떨어집니다. 다른 대학은 전부, 경원대학도 218억을 이사장이 횡령을 했다고 해도 검찰에 고발이 되었어도 감사도 미루고

임시이사 내려보내지 않고 서원대학 또 청주대학은 아직도 국회에서 작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많이 했지만 지금도 거기는 안 내려보내고 있고 그런데 외대 같은 경우는 두 세달 만에 조금 분규가 있는 것 같고 2억6,000 고발 당하니까 즉각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일관성 없이 그리고 균형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찬 장관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지금 새로 오신 장관께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부장관에게 드리는 질의지만 교육부에 다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외대만 유독 이렇게 빨리 관선이사 파견하고 또 그분들이 가가지고 불법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총장이 분명히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를 해놓은 건도 인정을 않고 총장실 내주지도 않고 그 안에서 지금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은 총장실을 점점하고 일을 했고 또 그분은 오히려, 우리 속담에도 더러운 빨래는 집안에서 빨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런 더러운 일들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훨씬 침소봉대해서 부풀려 가지고 신문에 내고 광고하고 교육부의 감사를 불러들이고 또 교육부 감사는 나가 가지고 첫날부터 감사 해 보지도 않고 법인 직인과 인감 빼앗았어요. 불법으로 압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가 편파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질게 여기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도 그래요. 이사도 임기가 다 된 강인섭 이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해서 올렸는데 취소시켜 버리고 거기에 또 나머지 네 분이 있습니다. 강영훈, 김진, 문희성, 설익규 이런 분들은 또 몇 달씩 놓아두었다가 8월달에 해임의결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장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교육부에 보고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총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건사항인가 하는 것을 묻고 이것은 즉답을 해주시지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다 했는데 총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보고 자체가 필수적인 요건사항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지금 반드시 할 필요는 없

다고 이야기하는군요.

○金貞淑委員 그러면 4월10일자로 서재명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의결해서 보고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서재명 교수가 총장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요. 서재명 총장을 당해 법인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 끝냈다고 나와요. 누가 질의를 했어요. 딱 떴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서재명씨가 총장이예요.

그런데 그 뒤에 관선이사 내려와 가지고 총장실도 안 내주고 그 다음에 인정도 안 해주고 서재명 총장이 가가지고 내가 총장이라고 해도 새로 온 관선이사장이 당신 뽑아준 이사들한테 가서 사의를 표해라. 나는 모른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으니까 학내 분규가 더 악화되는 것이예요.

먼저 총장 된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관선이사가 내려가는 그 첫 날부터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이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요. 어떻게 총장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日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김일주 위원입니다.

이양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 재단과 임시이사 나가신 분들하고 화합해서 잘 해나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證人 李陽熙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할 의향이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니까 지금 임시이사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지요?

○證人 李陽熙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한 분이 마음을 열고 불이익을 주었던 분들하고도 화합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證人 李陽熙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다시 한번 曹圭哲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학에 오래 계셨습니까?

○證人 曹圭哲 71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

수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외국어대학 출신이신가요?

○證人 曹圭哲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다른 분보다 학교에 대한 애정은 더 있겠군요.

저는 학교 주인은 동문과 교수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대화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학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단하고 화합해서 잘 할 생각 있으세요?

○證人 曹圭哲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李淑卿 이사장님, 朴昇濬 이사 두분은 승인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법적으로 전혀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金日柱委員 아니, 그 분들 외에도 많은 분이 徐在明 전 총장하고도 서로 고소하고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徐在明 총장님도 외대 출신이십니까?

○證人 徐在明 아닙니다.

○金日柱委員 저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학교에 개입하는 것 반대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막 사람들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고 지성인들의 모임인데 이 사회에서 법에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계속 나는 것 옳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교육부가 손댄 것이 전임 장관 때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횡령한 사실이 있으면 보상을 해내고 벌을 줄 것이 있으면 벌을 주고 해야지, 우리나라의 300개 넘는 대학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조그만한 문제점들은 대학마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대학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학에 이런 불이익을 주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 사학들이 이만큼 커 온 것은 설립한 분들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잣집 막내아들같은 사고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처의 차관이 공금을 좀 횡령했는데 과거 공직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나라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외국어대는 우리나라의 외교관 역할입니다. 그리

고 수출의 역군…… 물론 지금 모든 대학의 외국어학과에서 후진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의 외국어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공과대학이 있어서 모 대학이 그 당시에 인재를 다량 배출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 대학이 축산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일이 있다구요. 식품유가공 계통의 근대화도 30년, 40년전에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대규모 목장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교육이란 10년, 20년, 30년 앞질러가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내보낸다든가 간섭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대학이나 사학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사학의 분쟁을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承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교육법에 보면 상근하는 者라야 그 학교의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邊이사장님께서는 국제경제문제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상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근하지 않는 대학에서 돈을 지불해도 되는지, 두 번째 徐在明 교수의 총장 처리문제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세 번째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면 이사장은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 법에 보면 징계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사장한테 보여 가지고 결재받습니다. 바로 그 결재를 받는다는 그 과정은 바로 이사장이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 개진을 하라는 것이 법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잘 모르시고 아까 이사장께서 무조건 나는 모른다 해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 김종국씨를 교육부가 상임고문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대한 교비를 쓰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泰定 증인, 제가 교육법이 어떻게 개악이 됐는가 하는 것을 드렸는데 읽어 보셨나요?

○證人 金泰定 지금은 못 읽고 전에 신문에서 쓰

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래서 읽어보신 후에도 지금 저희들이 회의하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우리가 개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證人 金泰定** 그런데 이것은 외국어대학교 국정감사인데요 외국어 대학 관련 질의를 말씀해 주시지요?

○**朴承國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어대학에서 7敵, 5敵을 제일 많이 써붙이고 유인물을 제일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서울대학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외국어대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증인과 曹圭哲 총장이 직접 나가서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육법이 통과되고 총장이나 교수협의회장이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내가 두장짜리 글을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악된 것이 없다 그래서 개악이라고 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나하고 뜻이 다르다 그러면 그 구절중에 무엇이 다른지, 한번 어떤 것이 개악인지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해 보세요.

○**證人 金泰定** 이 교육관계법에 관련해서는 신문에서 제가 박위원님의 글을 읽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위원님께 정중하게 답변의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敵에 관한 것은 아까 李在五 위원님의 답변에서 적절하지 않다면 이 문제는 저희 연대회의에서 다시 재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朴承國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교육법 세가지 악법이라는 것이 초·중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을 주르륵 외웁니다.

그 중에 어느 구절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 구절이 악법이었는데 하는 것을 딱 지적을 해주어야, 오늘 같은 기회가 내가 '참, 잘못 만들었구나,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 참 잘못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개정할 것이 아닙니까?

자꾸 '악법이다, 7敵이다' 해놓고 여기 와서는 발을 쭉 빼버리면 우리보고 개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證人 金泰定** 그 법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길게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박위원님, 이 시간은 교육부장관께 질의하는 시간입니까 교육부장관께 질의하는 것으로 끝을 내세요.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개악이다 이런 구절은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하면 고쳐 드리겠다는 얘기에요.

○**證人 金泰定** 그런 것은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하면 제가 나가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아니, 공청회가 아니고 지금 교수님 뜻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證人 金泰定** 아니, 이 자리가 그걸 논쟁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薛勳委員** 의사진행발언주세요.

○**朴承國委員** 지금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證人 金泰定** 외대 관련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어요.

○**朴承國委員** 이것이 외대관련 아닙니까?

○**證人 金泰定** 외대하고 직접 관련되는 말씀만 하세요.

○**朴承國委員** 증인은 외대 교수가 아닙니까?

○**委員長 咸鍾漢** 박承國 위원, 그리고 증인,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서로.....

○**朴承國委員**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악이다, 반대다, 나쁘다' 하는 교수에게 이것을 등기로 다 부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다섯 분이 답변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글을 읽어 보고 뜻을 알아볼테니 그 과정을 잘못 다루고 오해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혼자서 답변도 안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證人 金泰定** 저도 다른 여러 곳에서 교육법에 관련된 여러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박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정중하게 보내 드리겠다구요.

○**朴承國委員** 글쎬, 그것도 좋은데 제가 즉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교육부장관, 교육위원들이 있는 나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얘기를 못해 줍니까?

○**證人 金泰定** 그러니까 외대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朴承國委員 이 일이 다 외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다른 대학에서 일어났으면 얘기를 안한다구요.

○證人 金泰定 아니,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지요 여기서 법 논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朴承國委員 법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證人 金泰定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朴承國委員 16일까지 보내 주세요.

○委員長 咸鍾漢 다음 安相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安相洙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평화적 운영, 합리적 운영, 여야간에 다름없는 운영을 위해서 야당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어왔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5분만에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신상에 관한 얘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한정 진행하면 앞서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끝낸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한 시간내에 끝내 주셔야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10분이요 20분이요 얘기한다면 원래 진행하기로 된 회의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앞으로 회의진행 하실 때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 5적, 7적 물론 5적, 7적 잘한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한분 위원이 정리를 했으면 그것 가지고 끝내야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본래 비리대학의 분규를 파헤쳐 가지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원장께서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5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들은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安相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의 분쟁을 해결하려 왔다가 저희들이 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데는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한 5분 꺾꺾 웃고 오니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쟁이 있고 다시 화합하고 대화하고 그래야지요.

장관님,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되면 어디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마는 안될 적에는 감사를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합니다.

○安相洙委員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 분쟁이 생길 때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대개 경찰이나 검찰이나 당국이지요. 무슨 법률사무소나 구청이나 가보면 그럼 반드시 양편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쪽도 여당의 누구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국에서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안오지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니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미리 인간관계가 있어서 먼저 우리한테 오면 저쪽은 또 다른 당 사람 이렇게 연락해서 오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것같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소위 비호세력 운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분쟁 당사자들간에 서로 안타깝고 그러니까 상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공정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주무책임자 혹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소감이 듭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경우 종교대학이 우리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단측은 金鎮建 총장의 학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허위라는 것이고 또 총장측에서는 元萬石 총장직 무대행의 학력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경력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속여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학력을 속였다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분쟁 해결 이전에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저는 장관님이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해결에

어느 정도 무슨 영향을 미칠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아까 申樂均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시비비는 가리고 화해는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시비비도 작은 것은 화해로 넘어가되 이것은 큰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분쟁을 할 자격도 없어요.

외대 문제는 저는 저 자신도 이것이 무슨 구재단하고 신재단하고의 싸움이라고 보고싶지 않고 정말 새로운 어떤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어서 현재 학교내의 교수집단들의 갈등을 화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임이 되든 신임이 되든 제가 보기에는 화합할 능력과 화합할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뽑든지 학내에서 뽑든지 구이사진에서 뽑든지 외부에서 뽑든지 그래야 할 것 같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분규가 있는데를 보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 여권 분들이 관련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권에서 이런 것을 이제 관여를 안하고 교육부에 맡겨 가지고 그래서 승복할 수 있도록…… 여권이 개입하면 또 억울한 사람들이 야당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부가 공정하게 하면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첨언을 드리고 추가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朴範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교과 관련해서 화곡동 산38-1번지 외 6필지 토지 매각건에 관해서 교육부에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사장 얘기는 사후에 다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이것은 너무 교육부가 법을 안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르게 하기 때문에 대학에 자꾸 비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장해임 건에 대해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6조의 2항 거기에 위배된다 그래서 해임 보고를 반려했다고 그랬는데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53조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 서로 얘기가 다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적법한 입장이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그 다음에 외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외대에 나가 있는 임시이사진은 국민의 정부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임시이사진입니다. 장관 대신에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 기관이 결정한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뭐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 교육부장관 자기를 대신해서 파견한 그 이사진이 국민의 정부기관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국감때 비리재단으로 비난받던 서원대학교가 있어요. 서원대학교하고 똑같은 행태입니다. 패턴이 똑같고 그 이유도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에 편·입학 임시부정이 교육부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했어요. 그런데 임시행정의 책임은 총장책임입니다. 군대고 공무원이고 어느 조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휘체계를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대의 경우에는 전혀 지휘체계를 묻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曹圭哲 총장 자녀의 입학에 부정의혹이 있다 그런 것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邊衡尹 이사장께서는 교수자녀 가산점 특혜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총장자신은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입시 사상에 교수자녀 가산점을 허가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李榮一 위원, 安相洙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늦어도 10월16일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10분 쉬었

다가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申樂均 위원님과 薛勳 위원님, 李在五 위원님께서 전부 그리스도신학대학의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해결방법으로 이사진 파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 대학을 유지·경영하는 법인은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명변경, 이사진간의 상호 입장차이에서 발생한 문제 등이 종교적인 특성이 있으면서 아울러 법인 재산운영과 관련한 비리로 검찰의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서 이사파견까지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金許男 위원께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선도할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 한국외국어대학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은 다른 대학의 경우보다 상당히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 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이사회의 허위 개최 등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이로 인한 학내분규가 발생해서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하는 등 면학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청주대학 등 사학분규가 나고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수업이 몇 달씩 파행되고 그러는데도 왜 거기에는 내보내지 않고 외대만 즉각 내보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대구 대학에 보낸 임시이사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본위원회가 지적한 것은 교

육부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딱 표방하고 있는 정책은 사학에 분규가 나면 자율로 해결해라 하는 것이 주로 표방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율로 해결하라고 해놓고 지금 사학분규가 몇 년씩 일어나고 있는 대학에 안 보내고 질질 끌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대학은 즉각 임시이사를 내보내요.

사실 외대는 제 생각 같아서는 관선이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고 차이사라는 사람에게 부정이 있으면 그대로 고발하고 사람 바꾸면 돼요. 책임지게 해서 바꾸고 보충해 주면 되지, 왜 즉각 임시이사를 넣어서 더 난리가 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金貞淑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薛勳委員 장관!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9개 대학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고 마지막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청주대학 문제를 金貞淑 위원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래서 임시이사를 충분히 파견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경원대학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18억원을 횡령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검찰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교육부가 감사도 안 나가고 고발도 안 했어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고발은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아주 나중에 했지요. 임시이사도 안 내보내고 그것을 어디다 넘긴 줄 아세요? 경원대학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소문에 학교를 팔아먹었다, 뒷돈을 받고 팔았다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감사도 시작하지 않고 임시이사 내보내지도 않고 새로 의혹이 있는 재단으로 넘기는데 그것을 또 승인해 주었어요. 경원대학도 지금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느 대학은 질질 끌고 이상하게 하면서 왜 이런 대학에는 즉각 내보내느냐 이거예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학분쟁위원회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전체 사학분쟁학교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록 하겠습니까.

金貞淑 위원께서는 또한 교육부가 徐在明 교수의 총장선임 보고를 받은 후에 曹圭哲 총장의 선임보고를 받았을 때는 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8년4월10일 동 법인 이사회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총장후보 중 徐在明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교육부에 보고된 것은 전부 알고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후 조규철 총장의 선임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총장선임을 위하여 요청한 98년8월24일 이사회에서 총장후보 소견발표에서 재명 교수가 옹하였고 총장선임투표 결과 한 표의 득표를 하였다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볼 때 서재명 교수가 자발적으로 이사회 총장선임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을……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제가 서재명 교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하세요.

○金貞淑委員 서재명 교수님 답변을 해보세요. 그 날 갔습니까?

○證人 徐在明 예.

○金貞淑委員 그러면 가서 어떻게 동의를 해주었습니까? 그날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證人 徐在明 동의한 적 없습니다.

○金貞淑委員 이야기해 보세요.

○證人 徐在明 그날 인사청문회라는 명목으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한국의국어대학교 총장입니다' 하고 주장을 했고 관선이사회는 '당신은 총장이 아니고 총장후보로 왔으니까 그리 알라' 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했더니 두 분의 임시이사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총장직을 사임할 의사는 없느냐' 해서 '없습니다' '당신 직장을 사랑하는 뜻에서 분란을 수습도 못하는데 왜 사임을 안 하느냐' '저에게 분란을 수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총장으로 선임되고 발령을 받았어도 총장실에도 못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 했길래 제가 사표를 냅니까? 저는 낼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짧게는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에 외대를 수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현황과 외대분규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 10여분 동안 발표를 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오늘 총장을 선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총장을 선임하려면 저를 해임결의하시고 뽑으십시오.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관선이사장이 저를 어떤 이유로 해서 해임시켜도 제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총장으로 선임해도 직무도 못한 사람이 무슨 총장이냐 그래서 너는 무능하기 때문에 해임한다 그러면 이사 정수 9명 중에서 그날 다 모였는데 저를 해임시키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저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마는 저를 4월10일부터 8월24일까지 총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것만 인정을 받으면 외대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金貞淑 위원님, 이에 대해서는 서재명 총장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는 그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金貞淑委員 그것은 물론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런데 교육부는 정말 이렇게 분규가 나가지고 임시이사까지 내보냈으면 지켜보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불씨가 더 크게 번진 것이 총장실 접거하고 안 내주고 하면서 더 분란이 났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서 보고로 왔다고 해서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바로 수리를 했다는 것이 저는 교육부가 상당히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알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이것은 엄연히 전 총장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물었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올라온다든가 하면 이것을 지난번에 보고해 놓은 건을 정리를 해야지 안 하고 총장 두 명을 그냥 보고를 받아버린 것이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金貞淑委員 이것 크게 잘못 된 것입니다.

○李壽仁委員 장관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서재명 증인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 소송결과가 승소를 하면 총장으로 취임을 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저희가 총장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李壽仁委員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것은 이사회가 다시 거기

에 대해서 토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李壽仁委員 그러면 장관께서 소송에 따라서 처리한다 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재명 총장이 소송을 냈으니까' 라는 '총장'이라는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서는 부지불식간에 서재명 증인께서 총장이라는 전제를 달고 사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신통치 않은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기 딱 알맞으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알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외대사태 당시 교육부에서 내놓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라고 썼는지 읽어볼게요. 외대학생이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총장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고 서재명 총장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재명 총장은 당해 법인이사 총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총장의 선임은 이사회가 결의해서 보고하면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대로 아마……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총장이지요. 총장이 있는데 그 총장을 놓아두고 새 총장이 올라왔다고 또 수리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나고요. 지금 외대가 법적인 총장이 들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 인데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한 것은 실무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證人 曹圭哲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證人 曹圭哲 그것은 지금 金貞淑 위원님이 굉장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10일날 이사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해임을 하든……

○金貞淑委員 보십시오. 조규철 총장님, 그 이사회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까 봐 제가 어젯밤에 2시까지 읽어보았어요. 읽어보고 또 제가 법 상식이 모자랄까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자문까지 받았어요. 유효해요. 지금 그것 가지고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100% 유효해요. 하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꾸 이사 숫자가 안맞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證人 曹圭哲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답변을 할 때……

○金貞淑委員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그 이사회가 무효라는 반론을 제기했었지요. 그것 다 읽어보았어요. 전부 다 합법적이예요.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하세요.

○金貞淑委員 그렇게 하세요.

○金許男委員 교육부에서 잘못 되었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막아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을 주면 어떻게 해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金日柱 위원님께서 소신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朴承國 위원님께서 학교법인의 비상근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나고 물으셨습니다.

학교 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이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朴 위원께서 교직원의 징계결의에 대하여 이사장이 결재하고 부당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나고 법 정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법 제66조제2항에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내용에 따라서 징계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朴 위원께서 이사회에서 서재명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으나 다시 曹 총장을 임명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金貞淑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또한 변형윤 이사장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대학의 고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동 법원에서 대학에 고문제를 신설하려고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우리부에서는 동 직제는 사립학교법 제70조2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인에 대한 민원사실 확인중 동 법인이

교육부 지시를 무시하고 이를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99년3월17일 등 수 차에 걸쳐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립학교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법인 및 학교가 운영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벌칙에 보면 교비유용이나 횡령 이것은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참고하겠습니다.

安相洙 위원님께서 분규문제 해결에 있어서 교육부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학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출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총장 허위경력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安相洙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보통 잘못 운영되면 괜히 책임만 좀 면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은 늦어지고 거기에서부터 파벌이 생기는 것 다 알잖아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님은 변호사협회 회장을 하신 박승서 위원장을 모셨고 그 다음에 사학의 재단측 한 명, 사학 총장 한 명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서울대 金 교수님 한 분 그 다음에는 공인회계사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朴範珍委員** 장관님, 잠깐 그것 의문인데 아까 고문제도는 사립학교법에 위법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한 것이 금년 3월이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임시이사진에서 교육부장관의 지시를 안 받으니까? 그것 아주 문제가 많은데요.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시를 했다는데도…… 아니, 교육부가 그렇게 힘이 약합니까?

장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사실상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제가 챙겨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範珍委員** 아니, 임시 이사진에 대해서 법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장관이 뭐하러 있습니까? 교육부 해체해야지.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계속 답변하세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朴範珍 위원께서 강서구 화

곡동 필지매각과 관련하여 허가조건 이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온적인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재산처분 허가시 처분목적인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금의 지정된 용도사용 매각대금의 공동명의예치 처분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 등의 조건을 붙여서 허가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이 공공명의의 예치 등 미이행 사항은 법인을 신뢰해서 조건대로 이행할 것으로 믿고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유감되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나중에 이행조건이 이행됐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朴위원님께서 그리스도대학의 총장 해임을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고, 법인에서는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법인의 金鎭建 총장을 해임한 임·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장의 해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8조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징계처분후 해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했으므로 99년8월9일에 반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부의 반려에 대하여 동 법인은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한 후 99년10월9일 이사회에서 해임하였습니다. 제53조의 규정은 면직사유와는 관계 없는 조항입니다.

○**朴範珍委員** 총장은 어느 대학이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잘 모셔야 하는 그런 지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단이 법 적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마음대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재단을 운영합니까?

하여튼 그리스도신학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세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또 朴위원께서 외국어대의 교직원 해임과 관련해서 징계심의회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징계재심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해

당학교를 기속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직원 징계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및 관련사항 등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며 학내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합의로 학교가 정상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朴範珍委員**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임시 이사진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진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範珍委員** 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訴 취하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거기 총장과 이사장에게 그러한 것을 집행하도록 촉구를 해서 그 다음에……

○**朴範珍委員** 문제가 있지요?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임시 이사진이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결정한 것을 수용을 안한다? 그것을 누가 파견한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朴위원께서 98년 4월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 부정을 적발하고서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4월 우리부 감사에서 한국의대의 부정 편·입학은 당시 총장 안병만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법인 전무이사 朴昇濤이 주도하여 부정 편·입학을 자행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장에게는 기관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적법한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에서는 교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그러한 규정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아까 가산점을 주어서 입학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속기록을 다시 보면 알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임시부정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답변 끝나셨습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委員長 咸鍾漢**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교육법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안에서는 재단도 보호받고 교수도 보호받고 학생도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법이 그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고,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육부가 그렇게 솜방망이 법을 휘두르려면 법을 만들 이유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말뚝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있을 때가 소중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보니까 그 소중한 생명을 무척 많이 끊으시네요. 그 업을 끊는다는 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풀 한포기도, 나무 가지 하나도 소중한 이 사회에서 그렇게 남의 생명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두들 교육부를 믿고 호소하는 것이고 교육부를 믿고 자기 직분에 충실한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장관님의 몫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관 그리고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학생들 장래도 있고 해서 내가 오늘 문제제기를 크게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어요.

아들 네명 외대에 다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曹圭哲 증인이 교무처장이었어요. 입시관리위원장이라고요. 다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 있었고 당시 교무처 교무주임이었던 장경태라는 입학관련 실무를 하던 사람이 부정입학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런데 자기 직속상관이 교직원 직계자녀 명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입학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을 공중까지 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입학부정이에요. 내가 학생들 점수까지 밝히려면 다 밝힐 수 있어요. 성적도 하위권이예요.

외대의 정보경영과, 이과는 대한민국에서 하나인가 들밖에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갈 성적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되는데 거기에 집어 넣고…… 증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장래도 있고 하니까 이름도 안밝히려고 그랬는데 한마디의 반성이 없어요.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것 임시부정입니다. 이것 정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委員長 咸鍾漢** 존경하는 위원님들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18일 마

지막 교육부감사에서 결론을 낼 것이고요 그 중에서 위증이 발견될 때에는 고발조치도 할 것이고 다른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위원장!

○委員長 咸鍾漢 李壽仁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壽仁委員 아까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는데 하나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 매우 도움되는 얘기고 본인 자신한테 도움되는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시 서면답변으로 또 한번 해주세요.

한국의국어대의 朴昇濬 전무이사가 교육부 김성동 교원징계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아주 가깝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답변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87년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안면은 있으나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해명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외대 구성원들간에 물론 파에 따라서 다르지만 파에 따라서 똑같이 이것은 밀착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유착했다는 그런 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집안 행사에도 참석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통상 자녀 결혼식때 부부가 같이 참석한다는 것은 내외끼리 잘 알든가 거기에 참석 안하면 안될 정도로 친숙하다든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부부가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동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朴昇濬 전무이사 내외가 참석한 사실이 목격돼서 그것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한다면 96년1월에 롯데 호텔에서 朴昇濬 전무이사의 모친께서 백수연을 했습니다. 모친의 백수연이니까 누구든지 갈 수는 있겠지요. 또 아는 사이니까 갈 수 있겠지요. 한 10여년 됐지 않습니까? 87년도에 교육관계로 안다, 안면 정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감 장소를 매우 어지럽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문제제기도 안해요. 그래서 구성원들간에 이것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수연에 참석해 가지고 김성동 위원장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제목까지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외대 구성원간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하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위치가 위치고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이런 어물쩍하는 답변은 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朴範珍委員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曹圭哲 총장 자녀 입학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듣기에는 邊衡尹 이사장께서 '교수자녀 가산점 특례에 의해서 입학한 것이다 그때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렇게 듣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邊衡尹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속기록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교육부에 대해서 제가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정입시가 사실이라면 그런 분이 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證人 邊衡尹 제가 曹圭哲 총장하고 관련해서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제 잘못이 을시다. 다만 제가 오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지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것입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金日柱委員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때 가산점 주었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委員長 咸鍾漢 알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李壽仁委員 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邊衡尹 이사장님께 여쭙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총장의 명예가 걸려 있고 또 이사장의 명예가 걸려 있고 교육부장관의 명예도 걸려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도 정확히 들었거든요. 朴範珍 위원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교수들 자녀한테는 가산점 제도가……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있었다는 것은 학계에 오래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證人 邊衡尹 예.

○李壽仁委員 학계에 오래 있었다 라는 것은 오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요?

○證人 邊衡尹 예.

○李壽仁委員 옛날에 저의 한 3·4년 선배들 그때는 서울대학교에도 교수자녀 가산점 제도가 음성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형제와 같은 선배들한테, 직접 본인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옛날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과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朴위원을 포함해서 저까지도 지금 ‘曹圭哲 총장님의 자녀들은 가산점 제도로 입학했다.’ 라고 그렇게 듣기에 알맞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건대 이사장께서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것을 속단을 하시고 ‘지금도 그것이 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만한 오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라고 해명을 하시고 사과를 하십시오.

○證人 曹圭哲 잘못 했습니다.

○薛勳委員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자녀 분이 몇 학번입니까?

○證人 曹圭哲 아까 金貞淑 위원님의 말씀대로 4명이 맞습니다.

86학번이니까 그 아이가 장남이고 3형제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제기한 88학번 둘인데……

○申樂均委員 4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證人 曹圭哲 86학번이 장남이고 88학번이 차남, 삼남입니다. 또 최근에 졸업한 아이는 딸인데 카톨릭대학교에 있다가 편입해서 작년 봄에 졸업해서 4명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교육부 감사에서 전부 끝난 것이고……

○委員長 咸鍾漢 됐어요.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부대학교, 한려대학교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의 학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出席監查委員

| | | | |
|-----|-----|-----|-----|
| 咸鍾漢 | 金貞淑 | 朴承國 | 安相洙 |
| 李壽仁 | 李源馥 | 李在五 | 金瑋鎬 |
| 盧武鉉 | 朴範珍 | 薛勳 | 申樂均 |
| 李榮一 | 金日柱 | 金光洙 | 金許男 |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 | |
|-------------------------|------------|
| 首席專門委員 職務代理 立法審議官 | 尙元鍾 金基尙 |
|-------------------------|------------|

○被監查機關參席者

| | |
|---------------------------------------|--------------------------|
| 教育部 教育部長官 次官 高等教育支援局長 監查官 | 金德中 李元雨 金永植 具寬書 |
|---------------------------------------|--------------------------|

○出席證人

| | |
|---|---|
| 그리스도신학대학교 理事長 總長 教授 재단법인그리스도 의교회이사장 敎務處長 理事 敎授 前敎授 | 田昌善 金鎮建 金寄舒 高星柱 高權舜 元萬澤 林成石 金成澤 金相奉 |
|---|---|

| | |
|--|---|
| 한국의국어대학교 理事長 總長 前理事長 前總長 敎授 敎授 敎授 前敎授 前企劃室長 法人事務處長 | 邊衡尹 曹圭哲 李淑卿 徐在明 金泰定 鄭圭浩 曹在鉉 李陽熙 趙鍾赫 |
|--|---|

| | | | |
|-----------|---|---|---|
| 法人事務處部處長 | 尹 | 重 | 燮 |
| 勞 動 組 合 長 | 張 | | 建 |
| 경원대학교 | | | |
| 總 長 | 李 | 大 | 淳 |
| 教授協議會代表 | 徐 | 翰 | 錫 |
| 常 任 理 事 | 康 | 祐 | 赫 |
| ○其他參席者 | | | |
| 그리스도신학대학교 | 朴 | 成 | 淳 |
| 事 務 局 長 | | | |